



핸드북 다운로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벤처나라 · 혁신제품

조달업체 등록 · 물품목록번호 등록

공공조달길잡이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조달분야는?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

2026. 4.

| 핸드북 발간 목적 |

금년도 조달청은 업무계획의 핵심 키워드인 체감 → 현장 → 행동 → 속도를 구현하고 실천을 뿌리내리기 위한 핵심조직으로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달현장혁신과는 6개월간 전국 곳곳의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정보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과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조달법령이나 용어도 공공조달 진출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은 2024.3.13일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청에 34명의 전문 컨설턴트인 공공조달길잡이를 배치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핸드북에는 공공조달길잡이 안내, 조달 분야별 제도 핵심요약, 자주하는 Q&A, 조달용어설명, 조달분야 참고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조달분야별 매뉴얼 및 동영상자료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중요 게시물에 대한 위치정보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발간합니다.

2024. 9.

조달청 신성장조달기획관 조달현장혁신과

I

공공조달길잡이

1. 공공조달길잡이 안내
2.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

08
12



II

조달업체 등록

1. 조달업체 등록
 - ※ 자주하는 질문
 - ※ 용어 정의

20
23
28

III

물품목록번호 등록

1. 물품목록 제도
2. 물품목록번호 등록방법(목록화 요청)
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 ※ 자주하는 질문
 - ※ 용어 정의

32
33
36
37
40

IV

벤처나라

1. 벤처 · 창업기업제품
2.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 절차
3. 벤처나라 예비 지정 제도
 - ※ 자주하는 질문
 - ※ 용어 정의

44
46
48
50
56

V

혁신제품

1. 개요
2. 혁신시제품(유형 II) 지정
3. 혁신장터 상품 등록 절차 및 구매 방법
4.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 ※ 자주하는 질문
 - ※ 용어 정의

60
61
64
65
69
74

VI

다수공급자계약(MAS)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 ※ 자주하는 질문
 - ※ 용어 정의

78
81
84
89

VII

우수조달물품

1. 우수조달물품 지정
2. 우수조달물품 관리
 - ※ 자주하는 질문
 - ※ 용어 정의

96
98
103
112

VIII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1. G-PASS기업 지정 제도
2. G-PASS기업 신청방법
 - ※ 자주하는 질문
 - ※ 용어 정의

116
117
120
122



Contents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



조달청



I

공공조달길잡이

- | | |
|-----------------|----|
| 1. 공공조달길잡이 안내 | 08 |
| 2.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 | 12 |

I 공공조달길잡이

1. 공공조달길잡이 안내

▶ 공공조달길잡이 도입 배경

- 창업·벤처·혁신기업들이 기술력을 갖추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여도 판매처를 찾지 못해 여러 부서를 헤매다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례 발생
 -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길잡이 도입
 - 2024년 3월 본청과 전국 11개 지방청에 조달 경험이 풍부한 직원 34명을 '공공조달 길잡이'로 지정·배치하고,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시작
- * 2025.3월 물품목록제도 2명을 추가하여 현재 36명 지정



▶ 공공조달길잡이란?

-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원하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벤처 → 혁신 → MAS → 우수 →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조달 전문관
 - 일회성 상담 및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업 맞춤형 피드백 및 밀착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진정한 기업의 벗
- ☞ 진정한 '벗'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잘될 때 더 잘되도록 밀어주는 사람.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이 될 것을 약속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려면?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판로 개척이 어려웠거나 공공조달에 진입하는 방법을 몰라 여러 부서를 헤매다가 결국 포기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 공공조달길잡이를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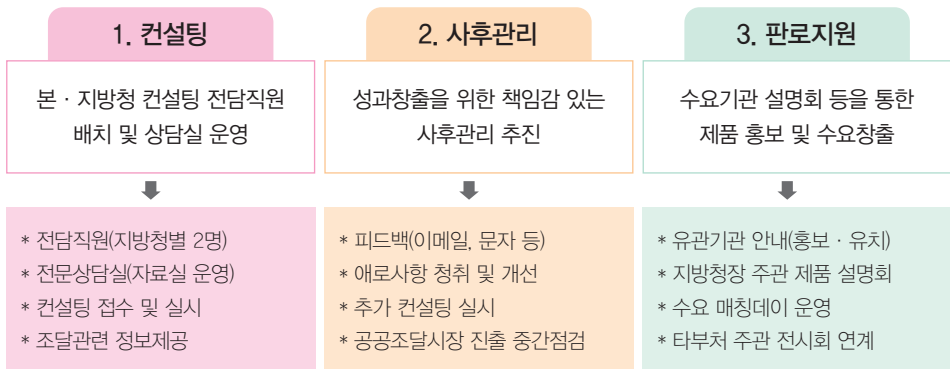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공공조달길잡이’)에서 “**상담예약**” 신청하세요.

☞ 컨설팅 신청 방법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공공조달길잡이’) → 상담예약신청 → 상담예약하기 → 본인인증 → 필수 입력항목 입력 및 컨설팅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첨부 → 신청 → 지방청 길잡이와 일정 협의 → 방문·전화·화상(ZOOM) 컨설팅 실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테크노파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공조달길잡이 배너’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서울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사)정부조달마스협회,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 (사)벤처기업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여성벤처협회, 도로교통공사, 비즈인포, 한국벤처투자

공공조달길잡이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공공조달길잡이 운영성과는?

- 공공조달길잡이 도입 이후 2026년 3월말 기준 총 2,639개사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401개 기업이 벤처나라,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 조달시장 진출에 성공

● 공공조달길잡이 생생현장



| 나라장터 엑스포



| 서울청



| 인천청



| 제주청



| 경남청



| 부산청

가까운 조달청에서 공공조달 길잡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 분		공공조달 길잡이			비 고
		이름	전화번호 (070-4056-)	e-mail (@korea.kr)	
서울지방조달청 (www.pps.go.kr/seoul)	책임자	정문선	8641	jms7189	
	담당자	한민섭	8650	hms_	
인천지방조달청 (www.pps.go.kr/incheon)	책임자	이성일	7721	sungil92	
	담당자	김 혁	7735	winklekh	
경기조달자원센터 (www.pps.go.kr/incheon)	책임자	신진철	7800	chul0508	컨설팅 전문센터
	담당자	임동진	7801	east8321	
부산지방조달청 (www.pps.go.kr/busan)	책임자	송세창	6580	scsong	
	담당자	이동욱	6522	wook1523	
대구지방조달청 (www.pps.go.kr/daegu)	책임자	안성환	7960	ash2000t	
	담당자	김희문	7962	po8op	
광주지방조달청 (www.pps.go.kr/gwangju)	책임자	안선희	8260	ahee69	
	담당자	최동한	8264	cdh79	
대전지방조달청 (www.pps.go.kr/daejeon)	책임자	권재령	8320	kjkj123	
	담당자	김민지	8329	wlsl3	
강원지방조달청 (www.pps.go.kr/gangwon)	책임자	이병규	8410	starrylee	
	담당자	강정희	8417	940584	
충북지방조달청 (www.pps.go.kr/chungbuk)	책임자	김윤희	8560	kyh200377	
	담당자	성예림	8563	yelim729	
전북지방조달청 (www.pps.go.kr/jeonbuk)	책임자	소재승	8920	sch6024	
	담당자	노지혜	8928	shgamja	
경남지방조달청 (www.pps.go.kr/gyeongnam)	책임자	노기환	6740	laury15	
	담당자	송경환	6749	seoung	
제주지방조달청 (www.pps.go.kr/jeju)	책임자	이수길	6960	sukil21	
	담당자	오혜화	6966	hyehwa19	
본청 (www.pps.go.kr)	책임자	김성훈	7237	kimsunghoon	벤처나라 제도
	담당자	서보용	7665	seoboyoung	
	책임자	박동민	6316	mwwk20	혁신제품 제도
	담당자	장윤정	7664	yj1107	
	책임자	김용대	7266	zerg7578	MAS제도
	담당자	오재균	7293	jwonder	
	책임자	안경화	7228	y030016	우수조달 물품제도
	담당자	김용현	7114	nogodan2001	
	책임자	고성주	6492	go4869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G-PASS)제도
	담당자	이법성	6487	kitol312	
	책임자	김주성	7174	juseong	물품목록정보
	담당자	윤여훈	7182	dugns22	

※ 인사 이동에 따라 길잡이 변경 시에는 길잡이 홈페이지(www.pps.go.kr)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

▶ 다양한 조달관련 지원제도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기업, 성장 및 도약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조달관련 정보 제공
- 초보기업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교육자료 게시
-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 서비스 신청 접수
- 공공조달시장진출과 관련한 질의 및 답변코너 운영

▶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는 이렇게 접속하세요.

▶ 경로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공공조달길잡이'

▶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공조달길잡이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 테크노파크

* 중소기업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어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서울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대전테크노파크,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사)정부조달마케팅협회,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 (사)벤처기업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어성벤처협회, 도로교통공사, 비즈인포, 한국벤처투자

▶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조달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동영상 매 매뉴얼

1. 공공조달길잡이 안내

- 공공조달길잡이 전담관 지정 현황(공지글)
- 공공조달길잡이 안내(공지글)
- 컨설팅 신청서 양식(1번)

* '24.12월부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공공조달길잡이')에서 컨설팅 온라인 예약 서비스 제공 중

2. 정보제공

① 입찰참가자격등록

- 동 차세대 나라장터 업무별 사용방법 A to Z(공지글)
- 매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관련 주요 FAQ(공지글)
- 매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매뉴얼(공지글)

② 물품목록등록

- 물품목록제도 안내(1번)
- 물품별 담당자 연락처(2번)
- 매 목록정보시스템 매뉴얼(4~9번)
- 동 물품목록 등록 방법(10번)
- 자주하는 질의응답(3번)

③ 벤처나라

- **매** 벤처나라 지정신청 매뉴얼(1번)
- **매** 벤처나라 상품등록 절차 매뉴얼(2번)
- **매** 지정기간 연장신청 매뉴얼(3번)
- 벤처나라 제도 안내(6번)
- 벤처나라 (예비)지정 신청 공고(7번, 9번)

④ 혁신제품

- **매** 혁신제품 평가가이드(공지글)
- **매** 제안서, 제품규격서 작성방법(공지글)
- **매** 혁신제품 지정신청 매뉴얼(공지글)
- **매**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절차(2번)
- **동** 혁신시제품 제도(4번, 7번)
- **매** 혁신장터 상품등록 매뉴얼(14번)
- **동** 혁신제품 · 벤처나라 설명회(20번)
- **동 매** 혁신제품 제3자단가 계약신청 및 서류작성(23번)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모집 공고(게시글)
- 자주하는 질의응답(1번)

⑤ MAS(다수공급자계약)

- **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1번, 4번, 5번, 12번)
- **동 매** MAS계약 2단계경쟁(2번, 16번, 21번)
- **동 매** MAS업무자동화시스템 정보등록, 계약요청(6번, 7번)
- **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 전략(14번)
- **동** MAS 계약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17번, 22번)

⑥ 우수조달물품

- 우수제품 지정관리 제도(1번, 13번)
- **동** 우수제품 지정신청, 계약요청, 재계약 및 수정계약 요청 방법(2번, 3번, 4번)
- 우수제품 지정 · 관리 규정(10번)
- **매** 우수제품 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11번)
- 자주하는 질의응답(공지글)

㉚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원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및 지원 계획(1번, 공지글)
-  매 G-PASS 신규 · 재지정 신청 매뉴얼(4번)
-  동 G-PASS제도 안내(6번)
-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13번)
- G-PASS기업 지정 · 관리 규정(11번)

㉛ 교육 등 조달정보

- 대한민국 조달제도 기본서(공지글)
-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 교육신청 매뉴얼(공지글)
- 납품검사 제도 설명(1번)
- 조달용어집(3번)

3. 유관기관* 지원 안내

- 창업지원사업 설명회 자료(1번)
-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안내(2번)
- 기업입찰 · 청년정책 맞춤형서비스(3번)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4번)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4. 질의 및 답변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조달업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공공조달길잡이가 답변 제공

우리 기업은 어느 분야가 맞을까? (기업에 맞는 공공조달 활용분야를 CHECK 해보세요)

단계	우리 기업은?	해당 트랙으로 가보세요
01 준비단계	 조달청에 업체등록을 했는가?	 조달업체 등록부터 진행해 주세요(20쪽)
	 제품에 대한 물품분류 번호를 받으셨나요?	 물품목록번호 등록을 해주세요(32쪽)
02 벤처나라 지정제도	 창업 · 벤처기업 인가요?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요건이 안되나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고 계신가요?
03 혁신제품 지정제도	 혁신제품을 개발하셨나요?	 시중에 상용화되지 않았나요?
		 상용화 되었나요?
04 MAS제도	 조달등록 기업인가요?	 상용화 된 공통규격제품을 생산하고 계신가요?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활용해 보세요(78쪽)
05 우수제품 지정제도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기업인가요?	 특허, NEP, GS등 기술개발제품을 생산 하고 있나요?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를 활용해 보세요(96쪽)
06 G-PASS 지정제도	 조달등록 기업인가요?	 해외조달시장진출을 희망하시나요?
		 G-PASS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116쪽)

이제부터 원하시는 조달분야를 찾아보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길잡이를 찾으세요.



II

조달업체 등록

1. 조달업체 등록	20
※ 자주하는 질문	23
※ 용어 정의	28

조달업체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하는 7만여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를 조회하여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합니다.
- 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조달업체 등록이란?

-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및 등록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절차

▶ 조달업체 등록절차는?

1단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발급 신청

인증서 종류	인증기관	비고
공인인증기관	한 국 전 자 인 증 스 코 한 국 정 보 인 증 한국무역정보통신 www.crosscert.com : 1566-0566 www.signkorea.com : 1577-7337 www.signgate.com : 1577-8787 www.tradesign.net : 1688-2370	유료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무료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한시적 무료

* 사업자용 금융인증서와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

2단계 개인회원 가입

- ▶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휴대전화 필요)
- ▶ 이용자등록 → 신규이용자등록 → 회원가입 → 이용약관 동의(필수, 선택) → 계속 진행(클릭)
→ 본인확인 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 후 저장

3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이용약관 동의 → 계속 진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 동의
- ▶ 등록분야(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별 신청 업체의 정보 입력
- ▶ 정보 입력 후, 신청업체 인증서로 확인(전자서명) 후 등록 신청(송신)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중 선택

4단계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 ▶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5단계 조달청 승인

- ▶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Ⅱ 조달업체 등록

1. 조달업체 등록

▶ 개요

의미 나라장터 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참가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격분야를 나라장터에 등재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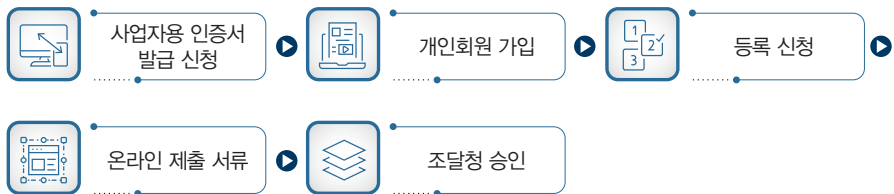
대상 공공입찰 참가를 통해 수요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

등록 분야 물품(제조/공급), 공사, 용역, 외자

관련 규정 입찰참가자격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계약예규)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조달업체 등록절차



▶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 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에 사용 가능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 (일반적으로 매년 110,000원)

공동 인증기관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코스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688-2370

- 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발급 및 보관(매년 4,400원)
③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인증사업자(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한시적 무료)
* ②, ③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은행에서 발급)

▶ 개인회원 가입

- ①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인증서)
② 이용자등록 → 신규이용자등록 → 회원가입 → 이용약관 동의(필수, 선택) → 계속 진행(클릭) →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 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 후 저장

▶ 등록 신청

- ① 로그인 → 이용자인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이용약관 동의 → 계속 진행(클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 동의
②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③ 정보입력 분야

- 가. 공통입력 정보 : 기본정보, 대표자 정보, 입찰대리인(필요시), 접수관련정보
나. 공급물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급물품
*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공급(유통)하는 경우
다. 제조물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장정보 + 제조물품(직접생산용역)
*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라. 일반건설면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건설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마. 전문건설면허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전문업종□주력분야
* 전문건설면허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바. 용역업종 등록업체 : 공통입력정보 + 공사·용역·기타업종
* 엔지니어링·SW개발·의료기 판매업 등을 보유한 경우

- ④ 인증서송신 :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중 선택

▶ 온라인 제출 서류

○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 가. 제조물품 신청업체 : 공장정보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관련서류 등
- 나. 일반건설면허 신청업체 :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 다. 전문건설면허 신청업체 : 업종 등록증, 업종등록수첩 등
- 라. 용역업종 신청업체 : 관련협회 허가증 등
- 마. (기타) 입찰대리인 신청 :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
지사 등록 신청 : 지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

▶ 조달청 승인

○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 로그인 및 입찰참가

○ 나라장터 로그인 후 공고서에 따라 입찰 참여(가격투찰·서류제출 등)

- ID/Password, 개인 인증서 로그인 시 신원확인을 위한 추가 인증(개인용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스마트나라장터인증, 개인용 금융인증) 필요
- 개인용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스마트나라장터인증으로 로그인 하시면 투찰 시 추가인증 불필요

▶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13쪽 참고)
 - 차세대 나라장터 업무별 사용방법 A to Z(동영상)
 - 차세대 나라장터_이용자_등록관련_주요_FAQ
 -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매뉴얼
 -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 교육신청 매뉴얼
 - 조달용어집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대표) 1588-0800, (일반) 042-610-1200

자주하는 질문(조달업체 등록)



- 조달업체 등록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주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입찰참가자격 등록)에서 알기쉬운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Q 개인용 인증서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A**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이용자등록이 사업자에서 개인회원 단위로 개편되면서 사업자용 인증서로는 로그인이 불가하며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 개인용 인증서 등록방법

- ① 아이디 / 비밀번호 로그인 (참고로, 개인회원의 로그인은 개인용 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 및 스마트 나라장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 ② 해당 메뉴 이동(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인증서관리)
- ③ 개인회원인증서관리 화면에서 > 주민등록번호 > 입력 및 [인증서선택] 클릭
- ④ 로그인 이용자의 개인용 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
- ⑤ [인증서 DN정보]에 선택한 인증서 정보가 보이면 화면 하단의 [저장] 클릭

Q 업체등록은 되어있는데 인증서가 만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해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이용자관리 > 기관/업체인증서정보관리 > 인증서추가/삭제 메뉴에서 신규등록해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①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이음장터+비촉 등 모든 업무 사용을 원하는 경우 : 아래 인증서 중 택 1
 - * 단, 금융인증서,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업무처리 시 별도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 한국무역정보통신(<https://www.tradesign.net>) / 1688-2370
 - 한국전자인증(<https://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https://www.signgate.com>) / 1577-8787
 - 코스콤(<https://www.signkorea.com>) / 1577-7337
 - 금융인증서 :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발급
 - 금융결제원(<https://yeskey.or.kr>) / 1577-5500
 -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 인증서 발급
 -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 1588-2588
 - 카카오뱅크(<https://kakaobank.com>) / 1599-3333

② 이음장터만 이용할 경우 : 용도제한 공동인증서 발급

- 한국정보인증 <https://servicepps.signra.com:4433/web-signra/main.sg>

③ 비촉업무만 이용할 경우

- 공동인증서 : 비촉업무용 용도제한 공동인증서 발급
 - 한국무역정보통신(<https://www.tradesign.net>) / 1688-2370
 - 한국전자인증(<https://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https://www.signgate.com>) / 1577-8787
 - 코스콤(<https://www.signkorea.com>) / 1577-7337
 - 금융결제원(<https://yeskey.or.kr>) / 1577-5500

Q 인증서를 갱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현재 사용중인 인증서를 발급받았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갱신하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시 인증서 선택창에서 발급기관을 확인하세요.

Q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나라장터 로그인 후 재발급 받은 업체 인증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용자관리 > 기관/업체인증서정보관리 > 인증서추가/삭제 메뉴에서 등록

Q 조달업체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A** 사업자용 인증서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등록 가능합니다.

■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방법

- ① 「관리자」 나라장터 로그인
- ② 이용자관리 > 기관/업체인증서정보관리 > 인증서추가/삭제
- ③ 기관업체인증서추가/삭제 화면에서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

Q 현재 업체에서 담당자 여러 명이 하나의 업체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담당자별로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도 담당자별로 등록을 해야 하나요?

- A** 담당자별로 개인회원 가입 후 사업자용 인증서는 한명만 등록하고 각 담당자별로 해당 사업자용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추가/삭제는 관리자만 가능합니다.

Q 업체 관리자 등록은 어디에서 하나요 ?

- A** 업체별 관리자는 복수 등록이 가능하며 관리자 등록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나라장터 로그인)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 하단의 [신규등록] 클릭)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 화면 [소속정보입력]에서 [√관리자] 클릭하면 흰색 → 파란색으로 변환되고 「사업자용인증서」가 표출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관리자' 등록 완료

(해당 업체로 소속등록이 되어있고 관리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용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원소속선택에서 [√관리자]체크 후 하단에 저장 클릭하여 사업자용인증서 선택 및 비밀번호 입력하여 전자서명하면 관리자로 등록됨)

2. 기존 관리자가 다른 소속 직원을 관리자로 등록하는 방법

이용자관리 > 소속직원관리 > 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 메뉴 화면의 [업체 소속직원목록소속정보입력]에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직원을 클릭, 상세 화면(업체직원정보상세) 이동하여 [소속직원정보]에서 [√관리자] 클릭하면 관리자 등록완료

※ 관리자의 역할

- 소속직원 조회·승인·탈퇴 등 소속직원관리 기능
- 입찰참가자격변경, 업체인증서등록, 자기정보확인등록증출력에서 수정, 사용인감등록 등 소속정보관리 기능 등

Q 입찰대리인 등록/변경 방법은?

A 1. 등록신청(신규)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입찰대리인 탭

[신청자본인추가] 클릭 → 입찰대리인정보동의(필수,선택) 체크 → 주민등록번호 입력[간편인증] → 본인신원확인 → 자격구분을 선택 후 [확인] 클릭하여 입찰대리인 목록에 표기됨을 확인

기본정보, 대표자정보, 공급물품 등 입력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송신] 클릭 →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방식 선택 팝업에서 '간편인증(개인사업자용) 또는 공동인증(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을 진행하여 신청 완료 → 안내문의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서류 제출

2. 변경신청(추가)

- 1)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임직원이 개인회원가입 후 로그인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 [신규등록] → 소속선택에서 '업체'로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 등록업체 선택 → 입찰대리인 [등록] 체크→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확인(필수,선택) 동의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간편인증 → 자격구분 선택 후 첨부파일을 등록 후 저장

- 관리자로 신청한 경우 소속 업체의 인증서(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로 확인하면 승인 없이 관리자 권한 및 소속이 부여됨

- 관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업체의 관리자가 이용자관리 → 소속직원관리 → 업체소속직원정보목록 → 요청한 건을 선택하고 승인해야 함

- 2) 업체관리자로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경쟁등록신청 → 이용약관 등 모두 동의후 [계속진행] 클릭

3) '입찰대리인' 탭에서 [입찰대리인 신청자 조회] → 입찰대리인 신청자 선택 후 [임시저장]을 클릭하고 '접수관련정보' 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 [송신] 클릭 ([입찰대리인 신청자 조회]하여 입찰대리인 추가하는 경우 신청화면에서 재직증명서 작성 버튼 클릭하여 작성 후 송신해야 함/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송신불가)

4) 전자서명 인증 선택 팝업에서 간편인증(개인사업자용) 또는 공동인증(사업자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을 진행하여 신청 완료 → 안내문의 제출서류 확인

5) 해당 서류를 온라인 제출

* 입찰대리인 자격구분별 제출서류

- 4대 보험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 고용보험 중 한 가지)가입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자체 조회되나, 전산장에서 요구할 수 있음)
- 소득세납부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Q 등록된 입찰대리인 삭제 방법은?

A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업체관리자가 로그인하여 삭제 가능

이용자관리>업체정보관리>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종출력 메뉴에서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 클릭 후 등록된 입찰대리인을 선택하여 우측 상단 삭제를 클릭하면 됩니다. 입찰대리인 삭제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바로 적용됩니다.

2. 입찰대리인 본인이 삭제 원하는 경우

나라장터 로그인 후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에서 소속탈퇴 버튼을 클릭하여 소속정보 및 입찰대리인 정보를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대해 소속은 유지하고 입찰대리인만 삭제 원하는 경우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클릭하여 선택 해제 후 저장하여 입찰대리인 정보만 삭제)

Q 입찰대리인을 등록하는데 전 회사에 등록되어 있어 등록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전 회사가 폐업상태인데 어떻게 등록하나요?

A ① 개인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메뉴에서 입찰대리인 우측의 [등록] 버튼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입찰대리인 승인 정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메시지를 확인하고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소속탈퇴 시 “탈퇴 시 해당업체의 입찰대리인에서도 제외됩니다.” 라고 나오면서 삭제됩니다.

Q 제조물품 유효기간 수정 시 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여부의 '신규등록/갱신'과 '유효기간변경'은 어떤 경우에 선택해야 하며, 어떻게 다른가요?

A 1. 신규등록/갱신으로 선택하는 경우

① 새로운 제조물품 등록

② 기 등록된 물품의 제조증명서류가 변경된 경우

* 공장보유형태 : 임대 → 자가 또는 자가 → 임대로 변경된 경우도 포함

③ 기 등록된 물품의 등록유효기간 갱신시(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포함)

* 조달청 제조물품에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임.

④ 제조물품 공장이 이전된 경우

2. 유효기간 변경으로 선택하는 경우

제조공장이 임차공장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 만료일로 3년보다 짧게 유효기간을 인정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기 등록된 물품의 제조물품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경우

* 조달청 제조물품에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임.

Q 대표자(또는 상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A 업체 관리자로 로그인 후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에서 이용약관 등 동의 후 [계속진행] 버튼 클릭 → [대표자정보] 탭의 입력내용을 모두 수정하거나, 우측 삭제 버튼 클릭하여 삭제 후 행추가 버튼 클릭하여 대표자정보를 모두 새로 입력하는 방법으로도 수정 가능합니다. 주소와 상호는 [기본정보] 탭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접수관련정보 입력 후 송신 후 안내문 출력하여 제출서류 확인하면 됩니다.

(단, 상호, 주소, 대표자변경의 경우는 제출서류가 없지만, 제출서류 여부는 반드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사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사(지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의 경우 본사 이외에 지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점(본사무소)에 관한 사항에 해당 지사가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정관상에 지사에 대한 상호,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대학 등)은 직제, 학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지사관계를 확인합니다.

Q 지사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A 지사의 경우는 입찰참가등록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이 되어 있는 본사의 업체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지사정보] 탭에서의 행추가 클릭하고 지사정보를 입력 → [접수관련정보]입력 후 송신합니다.

* 지사등록이행각서 (서식다운로드: 나라장터 상단-e고객센터-자료실-서식자료실) 법인(본사인감 또는 나라장터에 등록 사용인감 날인하여 온라인 제출

용어 정의

-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 입찰참가자격등록과 관련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조달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 조달관련 전체 용어집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교육 등 조달정보 → 조달용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물품)**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
- ◎ **(품명번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
- ◎ **(세부품명번호)**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
- ◎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문화재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
- ◎ **(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전산장비유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청사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
- ◎ **(이용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기관
- ◎ **(계재기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계재한 기관
- ◎ **(등록확인)**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

- ◎ **(대표대표자)**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 또는 관리인
- ◎ **(업종코드)**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
- ◎ **(행정처분기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 ◎ **(관리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관리인
- ◎ **(국외소재업체)** 국외에서 물품·공사·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 ◎ **(안전관리물자)**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



III

물품목록번호 등록

1. 물품목록 제도	32
2. 물품목록번호 등록방법(목록화 요청)	33
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36
※ 자주하는 질문	37
※ 용어 정의	40

물품목록번호 등록

-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및 계약 시 기준정보로 활용합니다.
-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용고객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달청 물품목록체계에 맞게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물품목록제도란?

-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식별하여 제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된 정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제도

* 조달기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서비스 등을 “물품목록번호”로 등록해야 함

▶ 물품목록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1단계 [물품분류번호]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 광의로 볼 때 세부품명도 포함

* 국제표준인 「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UNSPSC)」를 기반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운용

2단계 [물품식별번호] 물품을 생산자와 모델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로, 그 물품의 이름을 ‘품목명’이라 함

* 품목명은 세부품명(LED경관조명기구), 제조업체명(순수전기), 모델명(AB60C), 대표속성값(15W)으로 구성

물품 목록번호	[공통] 물품분류번호(8자리)				세부품명 (2자리)	[고유] 물품식별번호(8자리)
	품명					품목
계층구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품목 고유번호
분류명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액세서리 및 보조용품	조명기구 및 액세서리	옥외조명 및 설비	경관조명	LED경관 조명기구	LED경관조명기구, 제조사, 모델명, 15W
번호	39	11	16	05	01	25504282

▶ 물품목록번호 등록 절차

- (신청) 목록정보시스템(goods.g2b.go.kr)에서 물품목록번호 신청

* 사전에 신청하는 물품의 세부품명 단위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조달등록팀, 각 지방청 고객지원센터)

☞ 조달업체 등록면 참고

- (검토) 물품분류 적합성, 세부 정보 등 확인(조달연구원)

* 목록정보시스템 하단 물품품명별 “담당자 연락처” 참고

(대표번호 ☎042-472-8234, 042-710-4175, 4181, 4178)

- (승인) 주요 검토사항 확인 및 물품목록번호 발급(조달청)



물품목록번호 등록

1. 물품목록 제도

▶ 개요

의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식별하여 제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된 정보를 목록화하여 관리

→ 조달기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서비스 등을 “물품목록번호”로 등록해야 함

관련 규정 물품목록정보 관련 규정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 「목록화 지침」(조달청 훈령)

▶ 물품목록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부류로 나누어 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 광의로 볼 때 세부품명도 포함

* 국제표준인 「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UNSPSC)」를 기반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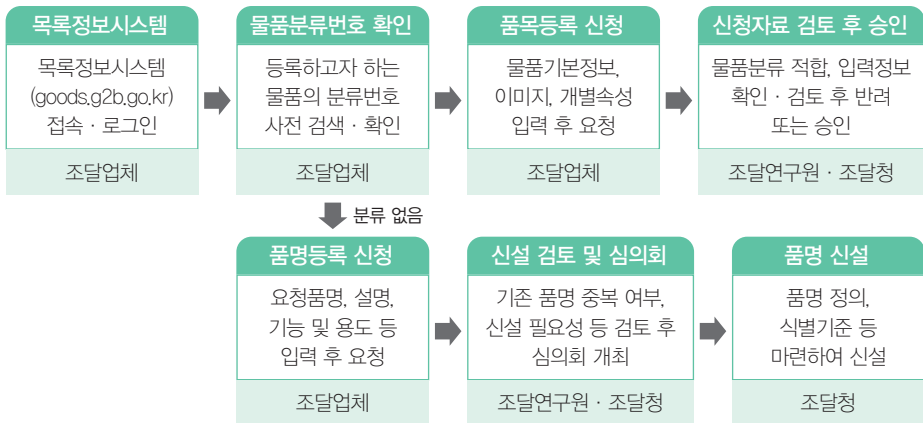
• **물품식별번호** : 물품을 생산자와 모델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로, 그 물품의 이름을 ‘품목명’이라 함

* 품목명은 세부품명(LED경관조명기구), 제조업체명(쑈쑈전기), 모델명(AB60C), 대표속성값(15W)으로 구성

물품목록 번호	[공통] 물품분류번호(8자리)				세부품명 (2자리)	[고유] 물품식별번호(8자리)
	품명					품목
계층구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품목 고유번호
분류명	전기시스템, 조명, 부품, 액세서리 및 보조용품	조명기구 및 액세서리	옥외조명 및 설비	경관조명	LED경관조명기구	LED경관조명기구, 제조사, 모델명, 15W
번호	39	11	16	05	01	25504282

2. 물품목록번호 등록방법(목록화 요청)

▶ 물품목록번호 등록 흐름도



▶ 제조물품 등록시 사전절차

- 조달기업이 물품목록번호를 제조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달업체 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세부품명을 제조로 신청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증 상 세부품명 제조등록 필수(지방청 고객지원센터, 조달등록팀에 신청)

(참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DM, JDM 등)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나, 상표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①제조계약서(해당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포함)와 ②모델명 · 제조업체명 등을 기재하여 물품에 부착한 명판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당 상표권 업체명을 기입하여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 물품분류번호 확인

- [지능형검색* 메뉴] 등록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품명)를 미리 확인

* 목록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검색어 사전을 통해 연관 물품분류 및 품목정보 제공

* 검색 메뉴의 '물품안내지도'는 대-중-소-세분류의 물품분류 계층구조 파악 용이

▶ 품목(물품식별번호)등록 신청

○ [목록화요청-품목등록 메뉴] ①추천분류 등록, ②참조등록, ③일괄등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① 등록요청하고자 하는 품목의 물품분류번호를 모를 때 추천받아 신청
- ② 기존에 요청했던 자료 또는 이미 등록된 유사품목의 등록정보를 참조 →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
- ③ 동일 품명의 다수 품목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엑셀양식을 통해 일괄 요청

○ 물품기본정보(공통속성)*, 이미지, 규격서 등 첨부파일, 개별속성**을 빠짐없이 입력 후 요청

* 원산지국가, 제조업체명, 단위, 주문자상표부착상품 · 복합상품 · 부품여부, 모델명, 제품설명 등

** 개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ex. 중앙처리장치 규격, 클럭속도)

〈 주요 등록신청 오류 및 보완 사례 〉

- 공급자가 품목등록 요청하면서 제조업체명에 공급자를 기재 → 생산자로 기재
- 모델명에 한글, 띄어쓰기, 특수문자 및 콤마를 사용 → 모델명은 영문, 숫자 및 ‘-’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ex. Cr-15B)
- 기존 등록된 모델명과 중복 → 같은 모델명 사용 불가. 단,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포장단위가 다르고 품목명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
- 이미지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작게 입력된 경우 → 이미지는 등록물품이 화면 중앙에 오고 크고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함
- 앞뒀던 이미지, 여러 가지 색상의 이미지 등 복수제품이 포함된 이미지를 사용 → 대표이미지는 제품 하나만 찍은 이미지 사용, 기타 이미지는 다면이미지로 등록
- 다른 모델에 동일한 이미지 사용, 타 업체 이미지 사용 등 → 제조사 모델에 맞는 정확한 이미지 사용
- 개별속성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 → 정확한 물품목록정보 관리를 위해 개별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한 충실히 기재(80% 이상 권장)
- 개별속성 측정단위 입력시 영문과 특수문자 혼동 사용 → 측정단위로 기입하는 영문자 또는 기호는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여 자판에 없는 경우 특수문자 입력
- 이미 물품식별번호가 있는 물품의 품목을 중복 요청 → 하나의 제품은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 사전에 기존 등록번호 존재 여부 확인 필요

▶ 품목(물품분류번호)등록 신청

○ [목록화요청-품명등록 메뉴] 기존에 등록된 적절한 품명이 없는 경우 신청하며 품명설명, 기능 및 용도, 신설 필요성 등을 충실히 기재

* 관련법령 및 규정이 있으면 품명설명 또는 비교란에 기재하고, 규격서, 매뉴얼, 도면, 실물사진, 품질기준(KS 등) 등 참고자료를 최대한 등록

→ 신산업(신기술, 융복합 등) 물품인 경우 보다 빠르게* 검토

* 행정소요일수 24일 → 17일로 단축 운영

〈 주요 등록신청 오류 및 보완 사례 〉

- 신설하려는 품명이 기존 분류 품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 → 사전에 품명 검색으로 등록품명이 있는지 확인 후 요청
- 특정 규격·모델의 제품에 대한 품명등록 요청 → 품목등록 메뉴에서 요청
- 요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설명이 부족
 - 신설될 분류의 기능, 용도, 정의,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카탈로그, 규격서, 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품명신설 필요성과 기존 품명과의 차이점, 관련 규정, 참고 웹사이트 주소, 주요 사용기관 등 참고할 내용을 기재

▶ 행정소요일수

- (품목등록) 요청 후 8근무일 이내 처리
 - * 보완요청이 필요한 경우 재접수시 우선 처리(요청번호 기준)
- (품명등록) 요청 후 24근무일 이내 처리
 - * 행정소요일수는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함
 - * 국제표준 분류체계(UNSPSC)에 없는 품명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3.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 종합쇼핑몰(세부품명, 규격, 물품식별번호, 이미지 사용)



세부품명 : 무인교통감시장치(2617168801) **중소기업자인정경제품**
 규격 : 무인교통감시장치, 두원전자통신, SPI-L0138-S, 불법주정차;
 단속
 식별번호 : 24973624 **3자단계계약** **참고항목보기** **유사상품조회**
 회사명 : 주식회사 두원전자통신 [중소기업]
 원산지 : 대한민국
 계약종료일 : 2025/12/29 | 납품기한 : 90일 (납품요구일로부터)
 현장설치도 | 전지역
 우선(의무)구매대상 : 

▶ 혁신장터(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이미지 사용)



**로봇청소기능이 결합된
『소형 미세먼지 수거차』**
33,000,000 원

※ 위 판매가격 가격은 혁신장터 운영규칙(초당형 고사 제2020-3463)에 따른 판매가격에 IVA(포함)이며, 혁신장터 운영규칙(초당형 고사 제2020-3463) 제46조에 의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3호에서 규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미달을 알려드리고나 입찰하실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 업체명 : 주식회사 한아
- 모델명 : DCG-FHHC200
- 제조/상장 : 제로
- 단위 : 대
- 중기인증정보 : 아메 사비트 제조
- 사업자번호 : 400063637
- 세부인증번호 : 472228222
- 제품인원명 : 202719999
- 기업규모 :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나라(물품식별번호, 이미지 사용)



스마트 그늘막(대형) DPSA-02

9,400,000 원 **유사상품 탐색**

※ 위 가격은 조달청 벤처 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점물 이용권(조달청고사 제2017-6호) 제24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3조 제1항 3호)에서 규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주)대성디자인	사업자등록번호	1248754443
물품식별번호	23513262	단위	조
중기인증정보	N	창업기업	N
		벤처기업	Y

▶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13쪽 참고)
 - 알기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동영상)
 - 목록정보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매뉴얼
 - 물품별 담당자 연락처
 - 목록정보시스템 업체명 변경요청 매뉴얼
 - 목록정보시스템 품목변경 요청 매뉴얼
 - 물품목록등록제도 안내

문의 : 조달청 물품관리과(070-4056-7182, 7271, 7257, 6463, 7348)
 목록정보시스템 문의(070-4056-6399)

자주하는 질문(물품목록번호 등록)



- 물품목록번호 등록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주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물품목록등록)에서 알기쉬운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Q 조달업체(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려는 경우 먼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요?

A 조달업체(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물품, 공사, 용역 및 외자물품의 입찰참가자격을 분야별로 등록하는 것이며, 물품 목록화 요청은 개별 품목(모델)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절차이므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조달업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물품분류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물품분류번호는 목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능형 검색 및 일반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검색메뉴의 “물품안내지도”에서는 전체 분류체계를 계층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물품분류번호는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하며 품명이라고도 합니다. 분류란 같은 종류의 물품을 한 곳(품명)으로 모아서 다른 종류의 물품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식별번호는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 화학적 특성(모델)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하며 품목이라고도 합니다. 식별이란 한 개 한 개의 물품을 구별하는 것으로 물품식별번호를 통해 각 각의 구별된 물품을 식별합니다.

Q 기존에 부여된 물품목록 중 모델명을 수정하고 싶은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물품목록번호는 계약 및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등록된 품목의 정보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델명의 경우는 수정 대상이 아니며, 신규 모델의 목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품목등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Q 목록화 요청을 하려면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A 반드시 인증서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장터 로그인과 동일하게 인증서가 아닌 'ID/Password'으로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로그인하여 목록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목록화 요청 절차와 진행상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A** 나라장터 로그인 방법과 동일하게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로그인 후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 메뉴에서 목록화 요청할 수 있으며, 목록화 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 사용됩니다.
목록화 요청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는 '목록화요청 > 진행상태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목록화요청 시 첨부할 수 있는 파일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 A** 제품 이미지 파일 용량은 5MB를 넘지 않아야 하며, 첨부파일(일괄양식 엑셀, 이미지 파일, 규격서, 매뉴얼, 도면, 기타 첨부파일) 크기의 총합은 5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미지 등록 시 주의사항

- 이미지 사이즈는 (권장)400 X 400픽셀, (최대)1024 X 1024픽셀 가능
- 이미지 모드는 RGB모드, 파일명은 한글이 포함될 경우 오류 발생할 수 있음
- 파일 확장자명은 jpg, jpeg, gif, png로 등록
- 일괄 등록 시 물품 하나당 1개의 이미지만 등록 가능하며, 폴더 없이 이미지만 압축해서 이미지 파일을 등록
- 일괄 등록 시 이미지명은 엑셀파일에 입력된 명과 대소문자까지 일치하게 입력(확장자도 포함)

Q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나요?

- A** 물품의 목록화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과 소요 예상 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계약, 물품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일 모델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여러 업체가 될 수 있으나, 물품의 목록화는 제조업체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개별 모델별로 별도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나의 모델에는 하나의 물품식별번호만 부여됩니다.

Q OEM 상품인 경우 목록화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나라장터 로그인 방법과 동일하게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로그인 후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식별번호 발급)' 메뉴에서 목록화 요청할 수 있으며, 물품기본정보 입력항목에 OEM상품 여부를 Y로 선택합니다.

OEM 상품의 경우 ❶조달업체(입찰참가자격) 등록 해당 품명번호를 공급물품으로 등록(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 > 수정 메뉴를 통해 추가 가능)한 후 ❷제조업체명에 공급업체명(상품권보유업체)을,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에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제조계약서(필수), 제조사업자등록증, 명판사진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 다만, 제조계약서('상표권, 모델명, 제조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가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

Q 어떤 경우에 품목변경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이미 등록된 품목정보는 당초 등록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속성값 등이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품목정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사유로 변경 요청된 경우
 - * 각 기관의 물품관리 및 조달계약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 요청자가 오류 또는 누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
 - 기존 상품 이미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깔끔한 이미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상품의 형상이 동일하여야 함
 - 의약품 등과 같이 국내 관리기관의 관련 규정을 따르는 품목으로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정보 수정, 추가, 삭제는 조달청 계약담당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 ※ 기존 제품의 규격변경 등에 따라 제품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품목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모델의 식별번호가 필요하면 새롭게 품목등록 요청

Q 목록정보 관련 규정과 시스템 세부 매뉴얼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목록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의 이용안내 세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메뉴에는 관련 규정 정보를, 시스템 매뉴얼 메뉴에는 접속 및 로그인, 목록화요청, 진행상태 조회 등 분야별 매뉴얼을 e-book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

-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 물품목록번호 등록과 관련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조달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 조달관련 전체 용어집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교육 등 조달정보 → 공지를 조달용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물품목록제도)** 물품을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식별하여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물품에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된 정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것
- **(목록화)** 물품의 목록화는 물품을 분류하여 물품분류번호(품명)을 부여하고, 각각의 물품에 물품식별번호(품목명)를 부여하는 과정을 말한다. 목록화 일반 원칙은 아래와 같다
 - **(통일성)** 분류의 대상과 목적일 동일하면 분류체계는 단일화되어야 한다.
 - **(포괄성)**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현재의 품목 및 신규 품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의 범위가 책정되어야 한다.
 - **(상호배제성)** 명확한 분류방법과 지침을 통해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분류는 상호 배제적이어야 한다.
 - **(단순성)** 분류명을 보면 상품의 특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
- **(물품분류번호)**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 등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하며 품명이라고도 한다.
- **(물품식별번호)** 물품을 생산자와 물리적, 화학적 특성(모델) 등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하며 품목이라고도 한다. 부여대상은 아래와 같다.
 -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
 - 속성이 모두 같은 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
 - 제조된 물품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 원칙(그래픽 이미지 등록은 불가)
 -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사용되지 않는 품목은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계약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 **(속성)** 물품의 특성을 기술한 데이터의 집합체를 말하며, 공통속성과 개별속성으로 구분
 - **(공통속성)**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제조사·상품원산지·상품이미지 등과 같이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
 - **(개별속성)** 상품에 대한 정보 요소로서, 상품분류체계의 세분류(품명)에 따라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자료

- ◎ (식별기준) 속성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세분류별로 작성한 개별속성의 집합체
- ◎ (UNSPSC) 유엔 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United Nations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로 UNDP(유엔개발계획)이 전자상거래를 위해 개발한 분류코드
 - * 현재 GS(Global Standard)1 US에서 UNSPSC 분류코드 관리
- ◎ (참조자료) 목록화 대상 상품을 분류·식별하는데 참조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자료 (관세품목분류번호, 국방재고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한국산업표준 등)
- ◎ (서비스) 재화를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활동
- ◎ (상품) 물품과 서비스를 포괄한 것
- ◎ (융복합상품) 상품분류체계에서 이미 분류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 또는 복합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신상품
- ◎ (융합상품) 융복합상품 중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결합되어 하나의 물체를 이루는 새로운 상품
- ◎ (복합상품) 융복합상품 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연계할 필요성이 높은 2개 이상의 세부품명이 복합되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상품
- ◎ (융복합품명) UNSPSC 분류체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99대분류를 활용하여 융복합상품을 등록하기 위해 운영하는 품명
- ◎ (신산업) 새로운 기술이나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 분야
-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가 개발하고 제조업체가 생산한 상품(위탁생산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
- ◎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체가 개발·생산한 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
- ◎ (JDM, Joint Development Manufacturer) 협력 생산한 상품에 주문자 상표 부착

IV

벤처나라

1. 벤처 · 창업기업제품	44
2.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 절차	46
3. 벤처나라 예비 지정 제도	48
※ 자주하는 질문	50
※ 용어 정의	56

벤처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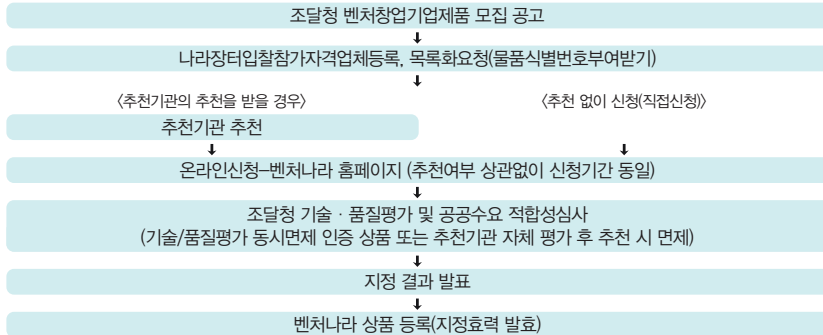
- 창업·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벤처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종합쇼핑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벤처기업 제품들을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수요기관-조달기업간 직거래 장터입니다.
- 벤처나라는 진입문턱이 낮아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첫 단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벤처나라’란?

-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판로개척과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몰

▶ ‘벤처나라’ 제품으로 지정되려면?

- **[지정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6년
- **벤처나라 등록 절차**



▶ ‘벤처나라’ 제품으로 지정되면?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 및 인증마크 제공, 벤처나라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1점)
- 조달청 G-PASS기업 지정 시 벤처나라 등록기업 신인도 가점(+5점)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IV 벤처나라

1. 벤처·창업기업제품

▶ 개요

- 벤처·창업기업이 생산·공급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의 추천과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

*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6.10월부터 조달청에서 구축·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물

■ 추천기관(총 38개)

- (중앙기관 : 7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17개)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기관 : 14개)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환경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관련 규정 벤처·창업기업제품 관련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 지정대상

- 중소기업자 중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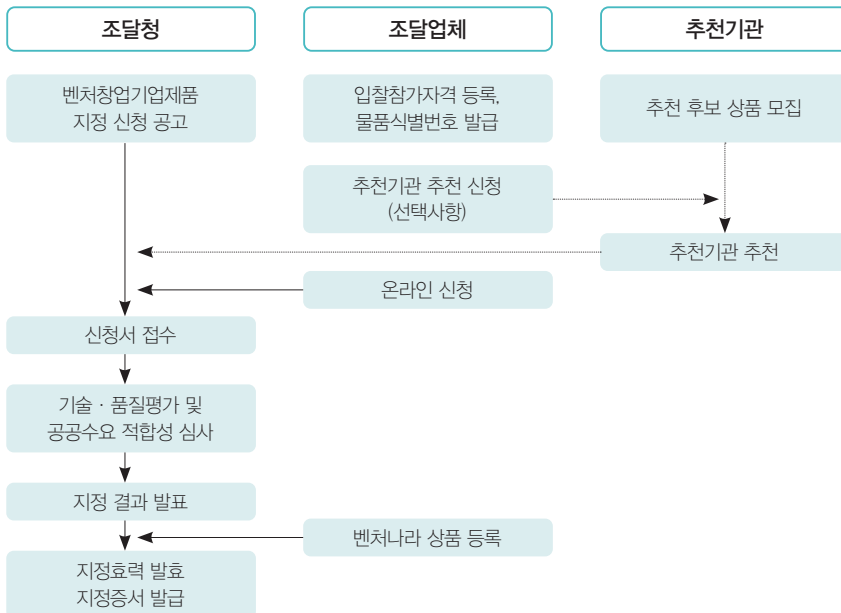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지정 제외 대상

- 휴 · 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
-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자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
- 지정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지정 절차



▶ 지정 기간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

▶ 지정 시 혜택

- 조달청 최종 심사 결과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벤처나라 등록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이 대상 업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G-PASS기업 지정 시 벤처나라 등록 기업 신인도 가점 5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 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지정 심사

○ 기술·품질평가 70점 이상,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2.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 절차

▶ 상품 등록 및 거래 절차



▶ 업체정보 및 상품정보 등록

- 이용기관의 업체 정보 확인 및 상품구매 편의를 위해 벤처나라에 업체 기본정보 및 홍보 정보, 상품정보 등록

※ 세부적인 등록 방법은 벤처나라 홈페이지(<https://venture.g2b.go.kr>) 오른쪽 상단 고객센터 → '온라인 도움말'에서 '차세대 벤처나라 이용업체 매뉴얼 등록 및 추가' 참고

▶ 견적 요청 및 견적서 제출

- 이용기관이 구매수량 및 납품조건에 따른 공급단가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에 견적 요청 ⇒ 업체는 벤처나라 이용 견적서 제출

▶ 주문 및 계약

- 이용기관은 견적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나라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주문 및 계약서 작성, 계약요청 가능

■ (주문서 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계약서 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조달청 계약요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 중 수의계약 가능 물품으로 구매액이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청에 중앙조달계약요청 가능

▶ 검사·검수, 대금 지급 등

- 주문 또는 계약 이후 검사·검수, 대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각 이용기관의 일반적인 구매 절차를 따름

3. 벤처나라 예비 지정 제도

▶ 개요

- 청년기업 및 초기 창업 및 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위해 벤처나라 지정 전, 6개월 간 시범적으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가능한 예비지정 제도 운영

▶ 신청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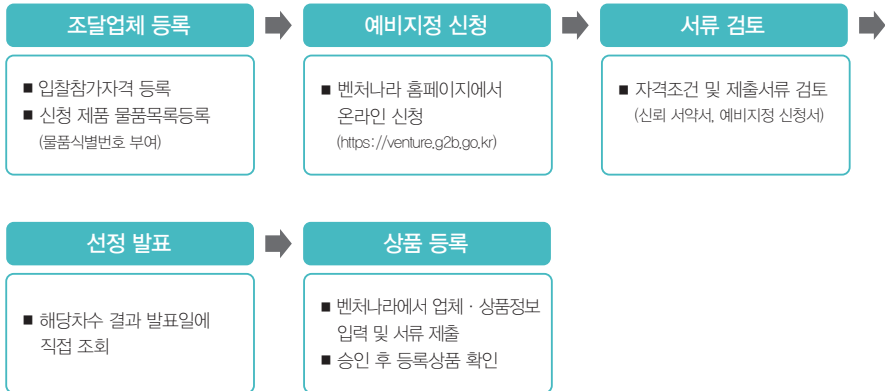
- (자격조건)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기업 : 창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차수 결과발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기업(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입력한 대표자 생년월일 정보로 자동 계산됨)
- 초기 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기업(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입력한 개업연월일 정보로 자동 계산됨)
- 초기 벤처기업 : 최초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업(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최초확인일 정보를 수신받아 표기됨)

▶ 신청 제외 대상

- 휴 · 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
- 음 · 식료품류, 동 · 식물류, 농 · 수산물류, 무기 · 총포 · 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자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
- 신청 상품이 이전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되었거나 예비지정으로 선정된 경우
- 국민안전물자에 속하는 제품(세부품명)
* 예시)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 법적 의무 인증이 없는 등 벤처나라 등록이 부적합한 상품

▶ 신청 절차



▶ 주의 사항

- (한시적 등록 조건) 심사를 통과한 정식지정이 아니므로 결과 발표일 기준 6개월간만 벤처나라에 상품등록 가능
- (벤처나라 지정 혜택 없음) 심사를 통과한 정식지정이 아니므로,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시 제공되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 (추후 정식지정 신청 가능) 예비지정 승인 이후 정식지정되는 경우 최대 6년간 등록 가능(정식 지정기간 : 지정기간 3년 + 연장 3년으로 총 6년)

▶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14쪽 참고)
 - 벤처나라 지정 신청 매뉴얼
 - 벤처나라 상품 등록 절차 매뉴얼
 - 벤처나라 지정기간 연장 신청 매뉴얼
 - 벤처나라 상품 구매방법 매뉴얼
 - 벤처나라 교육자료



문의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7193, 7506)

벤처나라 길잡이 (070-4056-7665, 7237)

자주하는 질문(벤처창업기업제품)



- 창업 · 벤처기업들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면서 자주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벤처나라)에서 알기쉬운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Q 만약 공공기관 직접거래가 아니라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납품한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해 주나요?

A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Q 물품납품 실적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 가능하나요?

A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사본 제출은 가능하나, 실적증명서 하위 제출 시 「벤처나라 등록 물품 ·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1조에 의거 지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Q 상품등록 유지기간(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은 어떻게 되며, 기간 연장은 가능한가요?

A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이고, 동일 세부품명으로 지정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Q 등록 대상 상품(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선정되면 벤처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동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업체 정보와 상품정보를 입력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벤처나라 메인화면 상단의 고객센터 → 온라인도움말 ‘차세대 벤처나라 이용업체 매뉴얼 등록 및 추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추천기관이 추천해 준 상품은 우리 회사의 주력상품이 아닙니다. 다른 상품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A 벤처나라 상품 추가 등록은 기존 지정받은 상품이 등록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 ·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하고, 적용기술 및 품질이 동등 이상이면서, 유사한 규격인 경우 가능합니다.

위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가지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상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정공고를 통해 추천, 심사, 지정절차를 거쳐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진행 중으로 벤처나라에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벤처나라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어려운 벤처·창업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품물로,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등록 예정인 상품 포함)과 동일한 상품 또는 세부품명이 동일한 상품이 MAS계약 체결되거나 우수조달물품 등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등록되는 경우 벤처나라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어떤 기관에서 추천을 하며, 추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 추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기관(총 38개)

- (중앙기관 : 7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광역자치단체 : 17개)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기관: 14개)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환경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추천 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는 신산업 및 융·복합 물품·서비스이며, 추천기관에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7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내부 추천절차를 거쳐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로 결정하여 조달청에 통보합니다.

내부 추천 절차의 세부사항은 각 추천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 회사는 제품의 핵심부품 외에는 대다수 외주생산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17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의 세부품명을 제조물품 또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의 공급물품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조물품 등록 사항은 벤처나라 메인화면 상단의 고객센터 → 관련규정 중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참고하시고, 외주생산방식 등 생산방식에 따른 직접생산 인정여부는 동 규정 제12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가격자료 총괄표 작성 시 원가계산가격, 거래실례가격은 무엇인가요?

A 가격자료 총괄표는 가격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원가계산가격'은 실제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한 경우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산출된 가격을 입력하시고,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거래실례가격'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 상 규격이 1식으로 되어있는 경우 거래명세서를 첨부) 최저가격은 거래된 내역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최빈가격은 빈도가 높은 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거래기간은 6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기간에 발생된 거래내역 확인을 위해 매출원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1건인 경우 최저가격, 최빈가격을 동일하게 입력하시고,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되며, 이때, 거래내역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민간업체간의 거래실적도 포함합니다.

Q 가격 증빙자료 제출서류 중 매출원장, 세금계산서사본, 카탈로그가격표, 견적서 등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가격검토 시 필요한 자료로 현재 제출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되, 해당 담당자가 가격검토 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기획전에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비로그인 상태)에서 벤처나라 홈페이지 메인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 참여하고자 하는 기획전의 신청 버튼 클릭 후 온라인 신청서 및 양식 작성 후 제출하시면 검토 후 등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상품 등록까지는 신청서 제출 후 2~3일(영업일 기준) 소요됩니다.

Q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정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벤처나라 인증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쇼핑물관리 - 업체정보관리 - 수정하여 제출 시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후 벤처나라 승인으로 변경되면 사이트에 반영됩니다.

Q 상품정보 수정을 요청한 경우 반영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접수일로부터 일주일가량 소요됩니다. (업무량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음)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 - 대시보드 및 마이페이지 - 쇼핑물관리 - 업체정보관리에서 상태값: 반려 및 보완사유로 확인 가능합니다.

Q 벤처나라에 상품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지정상품과 세부품명이 동일하고, 적용기술 및 품질이 동등 이상이며, 유사한 규격일때 해당됩니다.
또한 새로 추가하고 싶은 상품에 대해 물품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상품추가등록 가능합니다.

* 추가등록을 원하는 경우, 벤처나라 공지사항 중 [벤처나라 상품 추가 신청 안내]를 확인 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추가 승인 회신 받은 후에 마이페이지 - 쇼핑물관리 - 업체정보관리 - 수정 - 상품추가 입력하여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검토됩니다.

Q 지정증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업체상품 정보 승인 후 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운영관리 - 지정증서관리에서 지정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지정받은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 완료되어야 지정증서 목록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Q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의 크기 또는 일부기능을 변경하여 주문 가능한가요?

- A**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4조에 따라 규격변경 제작이 가능한 업체의 상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규격변경 제작 요청이 가능하며, 해당상품의 상세화면에서 '규격변경 제작 요청'을 클릭하여 희망하는 규격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규격변경 제작 요청서를 송신하면 해당 업체로부터 규격변경 제작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규격변경 제작 요청 이전에 업체정보에서 해당업체의 규격변경 제작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가격은 어떤 가격인가요?

- A** 벤처나라 등록기업이 제시한 거래희망가격에 대해 이용기관이 구매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검토한 가격을 말하며, 이는 조달청 계약가격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전에 벤처나라에서 조회되던 상품이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벤처나라에서 조회되던 상품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해당상품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0조에 따라 일정기간 이용정지 되거나, 제31조에 따라 벤처나라 등록 대상인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이 취소되거나, 동 규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된 상품입니다.

Q 각종 인증 관련 상품을 검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조건검색에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NEP, NET, 성능인증 등 각종 인증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and 조건' 또는 'or 조건'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상품상세 화면에서도 해당 상품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종합쇼핑몰에서 벤처나라 상품이 검색되나요?

- A** 종합쇼핑몰에서 카테고리 검색을 통한 벤처나라 상품 검색은 불가능하며 수요기관이 통합검색 방법을 이용하여 입력한 검색어가 벤처나라 이용업체가 지정한 키워드, 상품명, 업체명 등에 해당할 경우 검색 결과 상품리스트에서 벤처나라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상품을 클릭하여 벤처나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Q 벤처나라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용수수료를 내야하나요?

- A** '주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기능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별도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중앙조달계약요청으로 진행하는 경우 입찰 · 계약 대행에 따른 조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 벤처나라에서 주문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A** 아래에 해당될 경우 벤처나라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또는 7)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3천만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5천만원)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위의 1), 2)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 경쟁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인증이 있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방식으로 거래 가능합니다.

Q 벤처나라에서 상품구매 시 인지세, 채권매입 대상인가요?

- A** 벤처나라는 수요기관과 벤처창업기업제품 생산 기업 간 1인견적 수의계약방식의 1:1 직접거래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조례에 수의계약 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있으면 벤처나라 주문거래 또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이므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Q 2천만원 이하 구매 시에도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주문서 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물품상세화면에서 “주문하기” 클릭 후 “주문방식 선택” 화면에서 “계약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Q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종합쇼핑몰과 벤처나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단가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로서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쇼핑몰 등록 상품에 대하여 바로 납품요구 가능합니다.

벤처나라는 이용업체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이용기관과 이용업체간 주문 또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오픈마켓으로서 수요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상품에 대하여 견적 및 바로주문 절차를 거쳐 납품요구 가능합니다.

Q 업체 전화번호, 주소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벤처나라 일반정보에 표기되는 정보들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에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상에 정보가 변경되면 벤처나라 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Q 벤처나라를 통해 실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요?

A 벤처나라는 납품실적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업체에서 납품실적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수요기관을 통해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벤처나라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운영관리 - 수기실적 현황관리 - 등록 - 첨부문서 - 물품납품실적증명서 다운로드

Q 수기실적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벤처나라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운영관리 - 수기실적현황관리 - 등록에서 필수사항을 작성하시고, 증빙자료로 제품 단가와 수량이 표기된 세금계산서 또는 해당 기관의 직인을 날인받은 물품 납품실적증명서를 추가해 주시면 서류 검토 후 처리됩니다.

용어 정의

-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 벤처나라와 관련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조달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 조달관련 전체 용어집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교육 등 조달정보 → 공지를 조달용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벤처나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운영하는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물
-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
-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벤처창업기업제품)** 벤처·창업기업이 생산·공급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의 추천과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된 물품 및 서비스
- ◎ **(벤처나라 상품 등록)** 벤·창업기업의 상품을 이용기관과 전자적 거래 등이 가능하도록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것
- ◎ **(이용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중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물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벤처나라를 이용하는 기관
- ◎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 추천)**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 검토, 기술의 우수성 및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벤처나라에 등록할 후보를 추천하는 것
- ◎ **(벤처창업기업제품 심사)** 제7조의3 제10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기술·품질 평가하여 심사 대상으로 인정한 상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 여부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것
-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 ◎ (추천기관)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창업기업 또는 신성장 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조달청, 광역자치단체,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
- ◎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조달청의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
-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
- ◎ (세부품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를 구성하여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명을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것
- ◎ (물품목록번호)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
- ◎ (협업체)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
- ◎ (추진기업)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 보유 기업
- ◎ (참여기업)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
- ◎ (적용기술) 제8조 에서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
- ◎ (등록단가) 벤처창업기업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 제22조에 따라 제시한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거래 희망 가격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 ◎ (디지털서비스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과 별개로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1. 개요	60
2. 혁신시제품(유형Ⅱ) 지정	61
3. 혁신장터 상품 등록 절차 및 구매 방법	64
4.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65
※ 자주하는 질문	69
※ 용어 정의	74

혁신제품

- 기업이 혁신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개발하면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게 조달청이 우선하여 구매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공서비스개선과 기술 혁신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개발한 혁신기업들은 혁신제품 지정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혁신제품 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혁신제품은 혁신장터를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혁신제품 제도란?

-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

* 혁신제품지원센터(02-796-8234, www.kipcc.re.kr)에서 전과정을 도와드립니다.

▶ ‘혁신제품’에 지정되려면?

- **[지정대상]** 혁신성장지원, 국민생활문제, 미래대비 분야
 - (혁신성장지원 분야) 미래형 모빌리티, 드론, 에너지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업, 로봇, 인공지능(사), 조선·해양, 디지털 신기술(콘텐츠·ICT·소프트웨어)
 -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전기차 화재
 - (미래대비 분야) 저출생, 고령화, 양육·돌봄, 탄소중립,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약자 지원

* '기후변화 대응'은 폭염·폭우·혹한 등 기후문제 해결솔루션

- **[지정요건]** 특허권리자(실용신안도 가능), 신제품(NEP), 신기술(NET), 시제품, 제조자

• 혁신제품 심사 및 선정 절차

신청	• 신청서 양식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 공고 → 공고서 제목 클릭 → 첨부파일의 별첨1(제안서), 별첨 2(규격서) 등 다운로드 • '26년도 신청기간 : (공급자제안형) 3.3.~3.27.(2차), 5.26.~6.12.(3차), 8.31.~9.18.(4차) (수요자제안형) 연중 상시, (민간전문가추천형) 연 3회
심사	※'차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는 혁신장터 공지사항에 연발 게시 예정 • 1차 : 공공성 심사(모든 항목에서 심사위원 2/3이상 적합 판정 시 통과) • 2차 : 혁신성 심사(종합점수 70 이상이면 통과)
선정	•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의결로 지정(연4회)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최대3년 연장 가능(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증서 교부) *1차 연장(1년) : 공공기관 납품실적 있을 경우 인정, 혁신제품 공공기관 표창·기관 구매확약 등도 허용 **2차 연장(2년) : 1차 연장 기업 대상으로 유사기술 여부 또는 기술탁월성 평가

▶ ‘혁신제품’에 지정되면?

- ‘혁신장터’(혁신제품 전용몰)등록 및 최대 6년(기본 3년, 연장 3년)간 **수익계약 가능**
-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 계약체결하여 초기 판로 지원('26년 839억원)
- 혁신제품 구매목표비율 및 기관평가 달성 가능
 - * (목표) '26년 약 10천억원, (기관평가) '24년 물품구매액의 중앙 1.4%, 지자체 1.9%, 공공기관 2.2%, 공기업 2.8%, 구매목표 달성률 평가
- **수출선도형 시범구매**로 수출 지원
-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 조달의 날 전시회 등을 통해 마케팅과 홍보 지원
- 구매담당자의 **구매면책** 제도로 장차로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지원

[구매면책] 각 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구매면책(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혁신제품

1. 개요

▶ 개념

-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및 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19년 도입)

▶ 체계

- 기획재정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조달청*을 포함하여 산업부 · 중기부 등 18개 부처가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범정부 운영체계 구축

* 조달청은 각 부처 지정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혁신장터(플랫폼) 운영 및 조달(수의)계약 대행서비스 등 혁신제품 확산에 중추적 역할 수행

▶ 혁신제품 유형

구분	절 차
① 유형 I (각 부처*)	• 부처 R&D결과물 중 혁신성 · 공공성 인정제품 • 부처별 자체기술인증 중 혁신성 · 공공성 인정제품
② 유형 II (조달청)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 · 공공성 인정제품

*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특허청, 해경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국방부, 우주항공청(17개)

▶ 지정

- 공공서비스 개선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에 대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2. 혁신시제품(유형 II) 지정

▶ 개요

개념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또는 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와 공공조달제도 개선위원회)를 둠

관련 규정 혁신제품 관련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 지정분야

■ 공급자 제한형 : 1가지 분야 중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중복신청금지)

구 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형 모빌리티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농어업 ⑧로봇 ⑨인공지능(AI) ⑩조선·해양 ⑪디지털 신기술(콘텐츠·ICT)
2. 국민생활문제 분야	①안전 ②환경 ③건강 ④복지 ⑤교육 ⑥문화 ⑦전기차 화재
3. 미래대비 분야	①저출생 ②고령화 ③양육·돌봄 ④탄소중립 ⑤순환경제 ⑥기후변화 대응* ⑦사회적약자 지원 * '기후변화 대응'은 폭염·폭우·혹한 등 기후문제 해결솔루션

* (AI제품 전용 트랙 신설) AI제품 특성을 고려해 신뢰성, AI모델 적합성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기술 위주 평가 수행 ('26년 공급자제한형 4차부터 적용)

■ 수요자 제한형

- 수요자 제한형 : 수요기관·기업·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혁신조달로 연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과제를 공모하여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제품' 공모
-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 수요기관·기업·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혁신조달로 연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컨설팅하여 구체화하는 제도

■ 민간전문가(스카우터) 추천형 : 기술·금융·기업·창업 전문가*(스카우터)가 현장에서 직접 혁신 유망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추천

* (스카우터)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

▶ 신청대상

-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로 ①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②상용화 이전의 혁신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개발완성수준(TRL)

개발완성수준(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 · 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 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벤처나 등록제품은 2년 이내까지 허용)

▶ 신청자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특허(등록 후 7년 이내) 또는 등록실용신안(등록 후 3년 이내)이 적용된 제품

■ 신제품(NEP) 인증(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받은 제품

■ 신기술(NET)(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이 적용된 제품

■ (권리보유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권리 보유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 적용 제품
- (수요기관, 일반국민 제안공모 선정 과제) 국민생활 밀접, 긴급한 수요 및 공급 부족 등 해결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한 제품으로서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제품

▶ 심사 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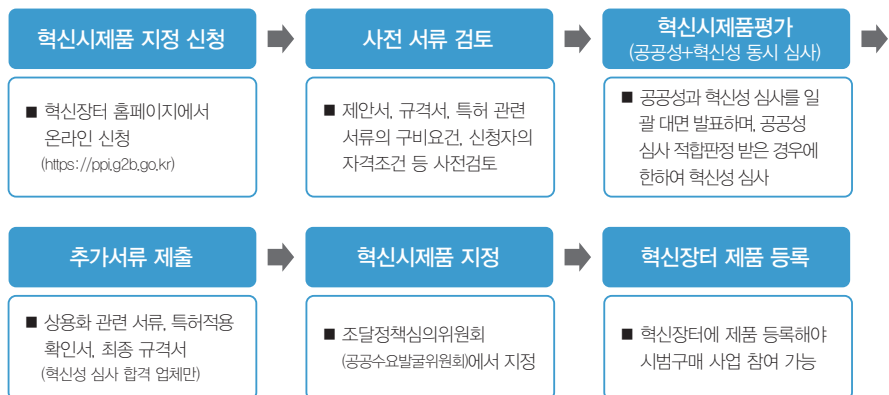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될 때까지 지정 심사 보류 가능

-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 · 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 (보류기간) 해당 심판 재결 또는 심급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
-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

▶ 심사 및 지정 제외 대상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휴 · 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인 경우)
-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인 경우)
- 동일 제품(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26년 공급자제한형 4차부터 적용>
* (예외사유) ①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지정 절차



▶ 지정기간

○ 지정 ·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며, 기간 연장 신청한 경우 심의를 거쳐 3년(①1차 연장 1년, ②2차 연장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다만,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하며, 이 경우 지정 기간내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지정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혁신제품과 적용기술이 동일하나 다른 세부품명으로 새롭게 신청하는 경우, 지정 기간은 기존 혁신제품 지정 기간의 종료일과 동일하게 설정

▶ 지정 시 혜택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상 금액의 제한 없는 수의계약 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초기 혁신제품 시범사용 가능

* 국내시범구매 354억원, 해외실증예산 140억원, 시범구매 임차 35억원

■ 구매담당자의 구매면책 제도적 장치로 혁신제품 구매 지원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7조제4항: 고의 ·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구매면책

■ 혁신제품 구매목표비율 및 기관평가 달성 가능

* (목표) '25년 약 8천억원 (기관평가) 중앙 1.2%, 지자체 1.5%, 공공기관 1.7%, 지방공기업 1.2% 구매목표 달성을 평가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

* 판로지원법 제13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총 13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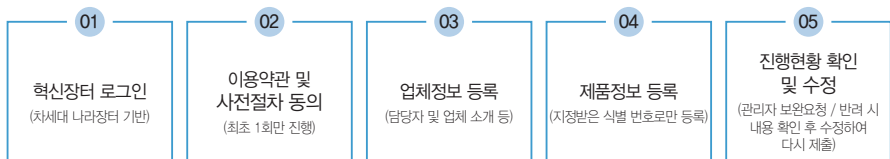
■ 혁신장터 플랫폼을 통해 혁신제품 검색 및 구매 가능(나라장터 계약 시스템 연계)

* 향후, 혁신제품 단가계약을 확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지원

■ 혁신제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연1회)

3. 혁신장터 상품 등록 절차 및 구매 방법

▶ 혁신장터 상품 등록 절차



- 제품 등록 제출 시 관리자가 해당 내용 확인 후 승인 처리
- 관리자 승인 처리 후 혁신장터 내 상품 노출 가능(승인처리 24시간 후 상품 노출)
- 수정 시 보완요청 처리 선행 후 진행(재승인 시까지 혁신장터 내 상품 노출 불가)
- * (혁신장터 상품 등록 매뉴얼 경로) 혁신장터 ➡ 혁신제품전용물 바로가기 ➡ 혁신제품전용물 화면 중앙 하단 [매뉴얼] 혁신제품 전용물 상품 등록 매뉴얼_이용업체용' 다운로드

▶ 금액별 총액계약 구매 방법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또는 중앙조달 요청 가능
-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 혁신제품 중 단가계약(우수제품 및 다수공급자(MAS) 계약 포함)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를 통해 구매

4.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 개요

개념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26년 839억원)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피드백하는 사업

목적 상용화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하여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

▶ 혁신제품 시범구매 업무절차



※ 테스트 결과 성공판정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1차 심사 시 특례* 부여

* (기준)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 (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품질소명자료 생략 가능

▶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제출

- 혁신장터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업체만 제출 가능(혁신장터 상품등록 필수)
- 해당 기본계획서는 시범사용 희망 수요기관 등에 제공

▶ 수요조사 대상제품 선정 및 시범사용 수요조사 공고 및 신청

- 수요기관 대상 시범사용 수요조사 실시 및 신청서 접수
- * 수요자제한형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과제제시 수요기관에 시범사용 우선순위 부여

▶ 심의를 통한 매칭(조달청)

- 신청기관의 수 및 수량,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용 기관 및 수량, 예산규모 등 확정

▶ 협약체결 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승인

- 수요매칭 후 1개월 이내 협약체결(조달청·시범사용 기관)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정기업과 협의하여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시범사용 기관) ⇒ 검토 후 승인·확정(조달청)

▶ 구매계약

-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사용 물품 구매 계약체결(조달청·지정기업)

▶ 납품 및 테스트 진행

- 납품 물품 검사·검수(조달청·시범사용 기관) ⇒ 시범사용 진행(시범사용 기관)

▶ 시범사용 완료 보고 및 결과 판정 공개 / 소유권 이전 등

-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시범사용 기관 ⇒ 조달청)
-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에서 완료보고서 적정성 여부(성공여부) 판단
- 완료보고서를 바탕으로 시범사용 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
-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범사용 수행기관에 소유권 이전

※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절차 매뉴얼 경로) 혁신장터(<https://ppi.g2b.go.kr>) 자료실 281번 게시물
'혁신제품 시범구매 가이드' 참고

▶ 시범사용 결과 조치

- (성공)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및 심사특례 적용
- (보완) 판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시범사용 보완계획서 제출(계약상대자) ⇒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 판단 후 추가 시범사용 수행(시범사용 기관)
- (미흡) 미충족 항목의 추가개발 계획서 제출받아 혁신제품 성능 개선 유도
- (이행불성실) 부정당업자 제재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14쪽 참고)
 - 공공조달 혁신, 우수, 벤처 제도소개 및 구매혜택안내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매뉴얼
 -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신청 및 서류작성 매뉴얼(동영상)
 - 혁신제품 기업대상 설명회(동영상)
 - 혁신시제품지정 실무 교육자료(동영상)
 - 혁신시제품평가 가이드
 - 혁신제품 지원센터 교육컨설팅 지원제도 안내
 -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계획 및 모집일정 등 안내



문의 :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070-4056-7420, 7217), 혁신제품 길잡이(070-4056-6316, 7664)
혁신제품지원센터(02-796-8234, www.kipcc.re.kr)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흐름도



자주하는 질문(혁신제품)



- 혁신제품 지정과 판로지원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주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혁신제품)에서 알기쉬운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Q 현재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업체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혁신시제품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수제품으로 신청하였던 특허 및 기술을 혁신제품에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 혁신시제품 신청 시 기존에 계약된 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에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진행이 불가합니다.

기존 지정제품과 동일 세부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성능비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성능비교표는 해당 업체의 기존 제품과 혁신시제품 신청 제품의 특허, 기술 등을 비교하여 작성하게 되며 해당 내용은 추후 혁신시제품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되어 기존 계약건의 규격서와 함께 평가 시 활용되게 됩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 추진 중으로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혁신시제품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식별번호 제품인 경우 혁신시제품 심사 및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이후(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전)에 다수공급자계약이 되었다면 이 경우는 지정 제외 대상으로 최종 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 이후에 다수공급자계약 등이 된다 하더라도 조달청의 시범사용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하여 4회 이상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탈락한 제품에 대한 누적 신청횟수 산정 기준은?

A '20년 9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누적 신청횟수를 확인합니다.

Q 혁신시제품 신청 시 복수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은 모집 분야별로 1개 세부품명(10자리)만 가능하며, 해당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식별번호(8자리)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등으로 지정받은 제품에 대해 세부품명과 핵심기술이 동일한 경우 지정신청 불가합니다.

Q 혁신시제품 평가 결과 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혁신장터 온라인 플랫폼(<https://ppi.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건 제목 클릭 > 평가결과조회 탭에서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하여 확인

Q 혁신시제품 평가에서 탈락 후 보완하여 재신청하고 싶은데, 평가의견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혁신장터 온라인 플랫폼(<https://ppi.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지정신청조회 > 신청건 제목 클릭 > 평가결과조회 탭에서
평가결과 상세조회 클릭하여 확인

Q 평가위원에게 제품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평가 시 제품 시연이 가능하나요?

A 제품의 크기, 시연 방법, 중앙관서 전산 보안 문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조달청 협의 후 시연이 가능합니다.

Q 혁신시제품 평가(대면평가) 시 발표는 아무나 진행할 수 있나요?

A 발표자 및 평가 참석자는 지정 신청기업의 소속 임·직원만 가능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Q 지정 신청하려는 제품이 규제샌드박스입니다. 혁신시제품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해당하는 제품은 혁신시제품 평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임시허가서 또는 실증특례확인서를 제출하여 규제샌드박스 여부를 소명해야 하며, 조달청에서 발급 부처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 평가위원의 질의사항이나 평가의견에 대하여 추가 소명이 가능하나요?

A 평가는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 소명으로 인한 평가 반영은 불가하므로, 질의사항이나 평가의견에 대한 소명은 추후 재신청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협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되는 경우 상품 등록 시 업체정보 기준은?

A 협업으로 신청하여 지정되는 경우 상품 등록의 권한은 '신청업체인 추진기업에게 있고 계약의 모든 책임 또한 신청업체(추진기업)가 맡게 됩니다. 식별번호는 참여업체가 부여받게 되며, 해당 참여업체는 단순 제조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종 지정 후 발급되는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에는 신청업체 뿐만 아니라 참여업체의 정보도 함께 노출됩니다.

Q 신청하는 제품을 자체 생산하지만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사용된다면?

A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 세부품명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제2 등품이 완료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세부품명 마다 직접 제조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기준을 확인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Q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또는 OEM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불가합니다. 혁신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므로 공급의 의미를 갖는 OEM은 제품을 직접 제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공장의 경우 신청제품의 직접 생산여부 및 품질, 성능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Q 지정신청 서류의 보완 범위 및 보완 방법은?

A 신청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하여 제출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보완기간은 접수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완 서류 제출 시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서류 보완은 혁신장터 지정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완사항을 확인 후 보완 기한 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

Q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지정일(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Q 혁신제품 지정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혁신장터를 통해 지정인증서를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혁신장터 로그인 > 혁신제품전용물 > [지정서]지정정보조회 > 업체명 검색 > 해당되는 제목 클릭 > 인증서(한글) 클릭 > 출력(로그인해야 출력버튼 보임)

Q 혁신제품 로고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업체는 혁신제품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혁신장터 자료실 : 혁신장터 홈페이지 > 자료실 > 혁신조달/제품 인증마크 디자인 가이드북 및 관련 파일 게시

- Q** 혁신시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어 받은 인증서로는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나요?
- A**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았다고 무조건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구매 결과 성공판정을 받아야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신청자격 부여 및 심사 특례가 적용됩니다.
- Q** 혁신시제품으로 최종 지정 후 업체 정보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협업체 관련 변경, 규격변경, 규제샌드박스 등의 기간변경 등 지정 업체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 나라장터 상의 업체 정보 변경 후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로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 기존 지정 내용과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비교 및 확인이 필요하므로 아래 증빙자료를 확인하시어 담당자에게 문서 또는 메일로 전달 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증빙자료 안내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제소 등록 여부, 특허등록원부, 규격서 등
- Q** 혁신시제품 전용물에 제품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A**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만 혁신제품 전용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혁신장터 로그인 > 사이트 상단 우측의 상품등록 배너 클릭 > 등록 버튼 클릭 > 업체정보 입력 > 상품정보 입력 > 우측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상품등록 담당자가 승인 처리 시 혁신장터에 노출
- Q** 혁신장터에 제품을 등록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나요?
- A** 혁신장터에 미등록된 제품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이 시범구매 참여를 위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제품등록이 필요합니다.
- Q** 다수 제품을 혁신제품 지정받았는데 혁신장터에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여러 제품을 한 번에 등록 시 동일 사유로 모두 반려 처리될 수 있으므로 대표 제품 1개를 우선 등록 신청하여 승인 후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제품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수 제품(물품식별번호로 구분) 등록신청 시 첫 번째 저장한 제품정보가 이후 제품 등록신청 시에도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 Q**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시범구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장터에 제품 등록 후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시범구매 수요조사 대상 제품에 포함되며, 수요기관 대상으로 시범사용 수요조사 실시 후 조달청 내부 심의를 거쳐 시범사용기관 및 수량, 예산규모 등이 확정되게 됩니다.
- Q** 수요매칭(시범구매) 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A** 수요매칭 금액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7조(수요매칭)에 따라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Q 시범구매 수요매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을 수 있나요?

A 지정받은 업체(지정번호 기준)의 수요매칭은 지정기간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시범사용 수요매칭 시 하나의 혁신제품(지정번호 기준)에 여러 개의 수요기관이 시범사용을 신청하더라도 시범사용기관의 수는 최소 1개 내지 최대 5개 이내이며, 시범구매금액 등과 함께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Q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매칭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시범사용 수요조사 시 수요기관에서 시범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번 수요조사에서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기본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공합니다. 다만, 4회 이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시범사용을 신청한 수요기관이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혁신제품 지정 후 지정된 혁신제품에 규격(모델) 추가가 가능한가요?

A 혁신시제품 규격추가는 지정당시와 ①동일 세부품명(소프트웨어가 핵심기술로 적용되고 다른 적용기술이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품명이 달라도 허용 가능), ②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 등)적용, ③최초 지정 제품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④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인 경우의 시제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공고서에 제출 기간과 서류 검토 및 보완기간, 평가 일정, 결과발표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간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규격추가 서류 제출 시 최종 결정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A 규격추가도 서류 제출기간, 검토기간, 외부 기술위원 심사, 의견 제출기간 및 혁신 조달 업무심의회의 등의 지정 신청시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유형2가 아닌 유형1에 대한 규격추가도 조달청에서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정심사 및 선정을 담당한 부처에 규격추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Q 혁신제품 지정 후 우수제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게 된 경우,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남아 있는 건가요? 해당 제품 판매 시 혁신제품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건가요?

A 혁신제품 지정 후 우수제품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게 된 경우 본래 지정받은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유지됩니다. 단, 혁신장터에서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 내 종합쇼핑몰로 이동하기 버튼이 노출되며 해당 버튼을 클릭, 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이 진행되게 됩니다.

혁신장터를 통해 구매해야만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매 후 혁신장터 혁신구매 실적등록은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용어 정의

-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 혁신제품과 관련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조달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 조달관련 전체 용어집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교육 등 조달정보 → 공지를 조달용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혁신제품 시범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에 따라 영 제33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
- ◎ **(혁신시제품)** 영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제품
-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원회
- ◎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영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
- ◎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 · 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심의회
- ◎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조달청 「신성장조달 업무심의회운영규정」 및 이에 준하는 규정에 따른 심의회
-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운영규정」에 따른 협의회
- ◎ **(협업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3개의 참여기업이 협업체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
- ◎ **(협업사업)**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 생산 ·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 **(추진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
-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기업

- ◎ (수요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관
- ◎ (수요매칭) 혁신제품을 시범 사용할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 구매할 제품의 수량과 예산규모를 정하는 것
- ◎ (혁신장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지원시스템 (ppi.g2b.go.kr)
- ◎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수요기관 · 기업 ·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것
- ◎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영 제33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
- ◎ (이해관계인) 혁신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혁신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
- ◎ (신산업기술개발제품)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첨단사업제품으로 “혁신조달 업무심의회”를 통하여 결정한 제품

VI

다수공급자계약 (MAS)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78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81
※ 자주하는 질문	84
※ 용어 정의	89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은 상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다수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자격요건(경영상태, 거래실적, 결격사유)만 충족하면 종합쇼핑몰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업들이 공공조달진출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이니 상용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란?

-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이란?

- 공공기관이 공통·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선호제품을 편리하게 선택·구매하는 공공조달 온라인 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이 가능한 물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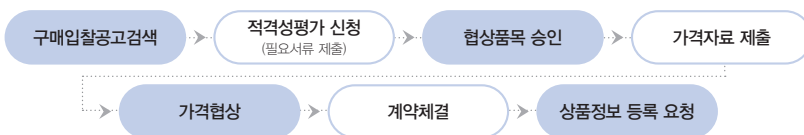
모두
만족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물품
- 상용화 되어있으며, 경쟁성이 존재하는 물품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 신기술제품, 연간 거래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되면?

-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따라 제품 판매가 가능, 기업의 입찰 관련 행정부담 완화
- 종합쇼핑몰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홍보나 마케팅이 어려운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

공고
검색
방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 → 구매공고 → 더보기 → 공고구분에 'MAS' 체크 → 해당 세부품명 입력 후 검색



다수공급자계약(MAS)

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 개요

정의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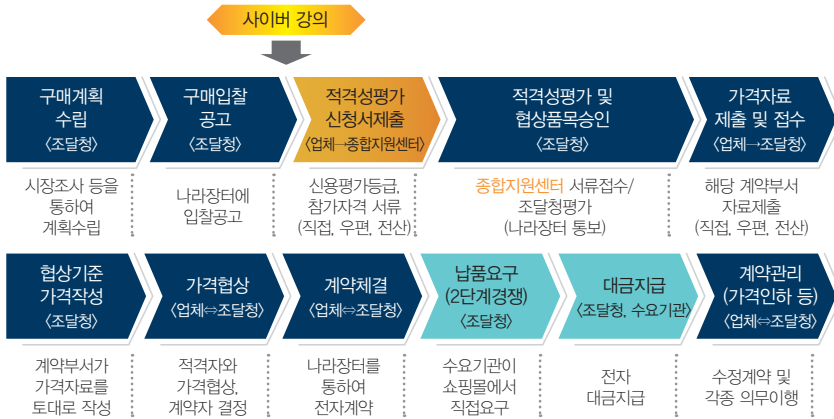
관련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 대상품목

-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
 -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동등 이상으로 경쟁이 가능한 수요물자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수요물자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사 이상일 것
 -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불가 사유〉
1. 수요물자 특성상 규격 등이 다양하여 적절한 거래실례가격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독과점 또는 담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요물자 특성상 업체 난립 등으로 가격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요물자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이 달라져 계약규격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수요물자 설치 시 공사업면허가 필요한 경우로 설치비 비중을 고려할 때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설치비 없이 물품의 본체로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6. 수요물자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관한 물자로 제품규격 및 시험기준 등을 고려할 때 안전관련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무처리 절차



▶ 구매공고

- **(공고내용)** 계약기간, 인도조건, 제출서류(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가격자료,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 규정 등
 -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직접생산)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 등
 - 공통상용규격,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 수 등 별도 명시
- **(공고기간)** 10년 원칙(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 조정 가능)
- **(차기공고)**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공고 게시

▶ 적격성평가

-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자로 선정
 - 결격사유 :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부도 또는 파산상태인 업체 (단, 창업 3년 이내의 제조(물품) 또는 서비스(용역) 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면제)
 - 신용평가등급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평가등급 적용(사전자격심사에도 동일 적용)
-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적격성평가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등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사이버강의) 의무 수강 후 적격성평가 신청

▶ 사전심사

■ (대상품명) 14개 세부품명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 국민 안전,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품명에 대해 사전자격심사 적용

■ (평가항목)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

■ (선정기준) 1차년도 공고 (65점 이상), 2차년도 이후 공고 (70점 이상)

■ (결격사유)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또는 부도 · 파산상태인 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사이버강의) 의무 수강 후 사전자격심사 신청

▶ 협상품목 승인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품목의 규격서 등 자료를 나라장터로 제출

- 협상대상 배제 품목 : 시험기준 미달, 공통상용규격과 상이, 업체별 계약규격수 초과(단, 공고서에 별도 명시한 경우), 특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경쟁성립 불가 물품
- 신규물품 납품실적 증빙자료 : 공고서에서 신규 계약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 제출(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 제출)

* 단, 창입 3년 이내 중소기업 제조 품목,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품목,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품목,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 장애인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조 품목은 납품실적 제출 예외

▶ 가격자료 제출

■ 승인받은 협상품목의 최근 1년간 규격별 가격자료 제출(원칙)

- 가격자료 제출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매출원장 등의 사본, 원가계산서 등)

* 수요물자의 수명주기, 거래빈도 등 감안하여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고서에 별도 기준 명시

▶ 협상기준가격 결정

■ 규격(모델)별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원칙)

-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 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원칙)
 - 가격제안서에 2단계경쟁 대상 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할인을 제시
 - 단,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할인을 제시
- * (할인을 변경) 당초 계약(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가능

▶ 계약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기준 3년 원칙(단, 구매공고 종료일 이내)
 -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 세부품명기준 3인 이상(단,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이 되는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
 - 종합쇼핑몰 등록 후 3인 이상 ⇒ 2인만 남는 경우 등록 유지(1인만 남는 경우 판매 중지)
- *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또는 거래정지로 인해 귀책없는 계약상대자가 1인이 된 경우 판매재개 허용

▶ 계약관리

- (계약단가 조정) 물가변동에 따라 단가 조정
 - 가계약단가를 인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함
 - 계약상대자가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인하 가능
 - (우대가격 유지 의무) MAS가격이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
 - 위반 시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계약단가 인하, 거래정지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
- * 시장거래가격 :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 · 판매한 가격, 총판공급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 개요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품질 · 가격 등을 비교 · 검토 하여 구매하는 2단계경쟁 제도 도입('08.6월)

▶ 2단계경쟁 제도의 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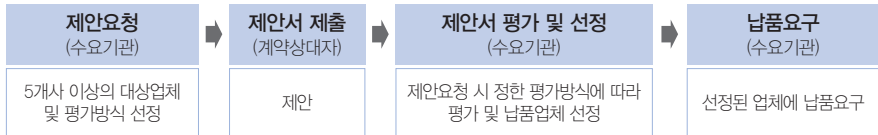
- **(적용대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 2단계경쟁 의무적용금액 : 대기업제품은 5천만 원 이상, 중소기업 제조제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1억 원 이상
- **(선정방법)**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을 충족하는 5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하고, 가격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 **(평가기준)**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Ⅰ ~Ⅱ) 중 수요기관이 선택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 **(적용대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선정방법)**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 및 수량을 공고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계약업체의 물품 및 가격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
- **(평가기준)**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Ⅰ ~Ⅱ) 중 수요기관이 선택
 - * 평가방법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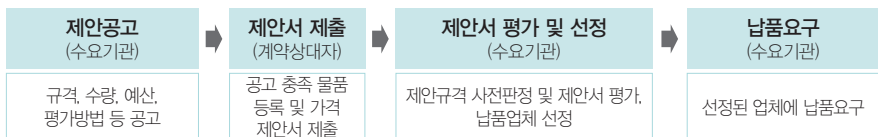
▶ 2단계경쟁 업무처리 절차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 제안요청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On-Line으로 시행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 제안공고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On-Line으로 시행

▶ 2단계경쟁 예외

■ 2단계경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조달청에 예외 요청)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시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 확충 및 부품 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공급자제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공급자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2단계경쟁 예외 원칙(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별도 요청 시 2단계경쟁 허용)

- 일반차량(소방차 제외), 백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 ※ 수요기관 희망가격 및 예산 총액 업체가 1곳 뿐인 경우 ⇒ 예외사항 미해당(2단계경쟁 가능 규격으로 완화 또는 규격완화 불가능 시 총액입찰로 전환)

▶ 2단계경쟁 회피금지

■ 2단계경쟁 회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 금지

■ 2단계경쟁 회피 방지를 위해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 납품요구 차단

* 단, 예산항목이나 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건과 상이한 경우 예외(수요기관 소명자료 소핑몰 등록)

▶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14쪽 참고)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MAS) 입점전략(동영상)
 - 다수공급자계약(MAS) 쉽고 빠르게(동영상)
 -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개요 및 업무처리절차
 -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관리 및 계약이행실적평가(동영상)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방법(동영상)

📞 신규계약 등 제품관련 문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품명별 담당자(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참고)

📞 제도 관련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273)
다수공급자계약 길잡이 (070-4056-7266, 7293)

자주하는 질문(다수공급자계약)



-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주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알기쉬운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Q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려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거나, 다수공급자구매공고를 통해 조달청과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 후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종합쇼핑몰 하단 쇼핑도우미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안내 참조)

■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 체결

- 우선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 관련 다수공급자구매공고를 조회[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공고확인하기)]를 통해 확인 후 해당 공고의 참가자격 및 절차 등을 확인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을 위해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로그인 후 해당 공고 화면에서 적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고(공고서에 명시된 경우)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로 신용평가정보가 전송되어야 합니다.(창업 3년 이내의 제조 또는 서비스업체는 신용평가등급 면제)
- 협상품목 등록을 위해 조달청과 계약하려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를 각각 부여받아야 합니다.(물품목록등록 참조)
-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등록이 완료되면 가격기초자료 제출 후 가격협상까지 완료되어야 조달청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야 종합쇼핑몰에 물품이 등재됩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제출 서류 중 민간거래실적에 대한 기준이나 작성 양식이 있나요?

A 민간거래실적에 대한 양식은 종합쇼핑몰 - 쇼핑물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MAS규정 및 관련법률 조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별지 3의2]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에 대해 품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품목추가는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변경관리 > 품목추가 메뉴에서 추가할 품명 선택 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품목추가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며, 가격자료와 규격서 제출 후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품목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에 대해 수량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수량 추가는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변경관리 > 변경요청서작성 메뉴에서 해당 계약건을 선택하면 다수공급자계약 변경요청서 화면으로 이동하며 계약내용 > 변경항목에서 수량 체크 후 물품 내역에서 변경 수량을 기재하여 저장 후 송신하시면 됩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에 대해 조달업체에서 단가 인하 요청하는 방법은?

A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변경관리 > 변경요청서작성 > 다수공급자계약 변경요청서 작성대상에서 계약번호 클릭하여 변경항목을 단가인하에 체크하고 물품내역에서 단가를 변경하여 저장 후 송신하시면 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으며,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 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 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할인행사 신청방법은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할인행사신청 > MAS 할인행사 신청 목록에서 할인행사대상계약목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계약건을 선택하면 MAS 할인행사신청 화면으로 이동하며, 신청서에 문서번호, 할인행사구분, 할인행사명, 행사기간, 행사내용과 할인단가, 할인수량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하면 됩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각 세부품명에 대해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에 대해 중간점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점검은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중간점검자료제출 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Q 종합쇼핑몰 내 소상공인 마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를 통해 나라장터 등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정보 중 [기업인증정보]의 소상공인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하며, 해당 세부품명으로 제조물품에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 인증마크가 표시됩니다.

Q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에 대한 인증정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또는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상품등록관리 > 상품정보등록에서 적격성평가번호나 계약번호로 검색 후 인증부분의 '미등록'을 클릭하여 정보 입력한 후 추가 · 저장, 전송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여러 품목에 대한 인증을 [인증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등록요청 가능하며, 인증정보 외에 유의어와 상품상세정보 등록요청도 가능합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결과 적격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수요기관 희망 규격 및 예산 충족 업체가 1곳 뿐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단계경쟁이 가능하도록 규격을 완화하거나 규격 완화가 불가능할 경우 총액입찰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2단계경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조달청에 예외 요청)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 또는 이상기후(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발생시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 확충 및 부품 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
 -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2단계경쟁 예외 원칙(수요기관이 조달청에 별도 요청 시 2단계경쟁 허용)
 - 일반차량(소방차 제외), 백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Q 수요기관이 다수의 품목을 일괄구매할 경우 2단계경쟁 적용 기준은?

- A**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중기간경쟁제품, 일반제품이 혼재되어있는 경우 시스템상 제어하고 있는 2단계 경쟁 진행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일반제품(공급), ②중기간경쟁제품 + 일반제품(공급), ③일반제품(공급) + 일반제품(중소기업, 제조)]
⇒ 5천만원 이상 시 2단계 경쟁
 - [①중기간경쟁제품, ②일반제품(중소기업, 제조), ③중기간경쟁제품 + 일반제품(중소기업, 제조), ④일반제품(중소기업, 제조) + 일반제품(중소기업, 제조)] ⇒ 1억원 이상 시 2단계 경쟁
- ※ 다수의 물품 구매 시 물품별 2단계경쟁 기준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기준금액 적용

Q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제안요청 대상자에 대한 상한선과 제안서평가 결과는 자동으로 공개되는 건가요?

A 나라장터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시 업체 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으며, 수요기관 담당자가 제안서평가 진행 후 제안서평가 결과화면에서 평가 완료 버튼 클릭 및 확인하면 제안요청서를 수신한 업체들에게 평가 결과가 공개됩니다.
업체는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제안요청 > 제안평가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건의 선정업체 및 해당 업체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항목 중 수출기업지원 평가 방법은?

A 제안서 평가 시 수출 중소기업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점을 직접 입력하고, G-PASS 기업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하며, “가중평균 평점 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의 G-PASS 기업 여부에 관한 가중평균점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합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서 평가 시 창업기업인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받을 수 있나요?

A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됩니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로그인 후 물품 > 제안공고 > 제안공고목록에서 조회하거나,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제안공고 > 제안공고목록에서 제안공고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의 평가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조달업체로 로그인 후 하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정보 조회 제안공고 > 제안평가결과조회 또는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주문 > 제안공고 > 제안공고 관리에서 조회 가능하며(제안공고에 제안규격등록 후 제안서 제출한 업체만 목록이 조회됩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사전판정에서 규격부적합 업체는 진행상태만 확인 가능하고 평가결과는 확인 불가능합니다.

Q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던 상품이 현재 내려간 상태인데 납품기한 연장은 최대 며칠까지 가능하나요?

A 종합쇼핑몰에서 상품이 내려간 상태라도 납품기한 연장은 가능하며, 분할납품변경 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경우 계약종료일+240일이며, 제3자단가계약 물품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Q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납품요구 시 납품기한 설정 방법은?

A 조달요청서 작성 시 기본적인 납품기한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정한 납품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종합쇼핑몰에서 검색하여 조회된 물품 목록에서 납품기한 정보 확인 가능)
납품기한을 기본 납품기한 이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요기관 임의로 납품기한을 조정하여 주문하는 것이 아닌 주문 전에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조달요청서 송신(주문)이 가능합니다.

용어 정의

-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조달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 조달관련 전체 용어집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교육 등 조달정보 → 공지글 조달용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 · 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수요기관)** 「조달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 **(수요물자)**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 공급하는 물품
- **(계약상대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
- **(종합쇼핑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
- **(계약담당공무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 **(구매업무심의회,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
- **(품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
- **(세부품명)**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

- ◎ (시험)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
- ◎ (검사)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
- ◎ (품질점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 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를 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는 것
- ◎ (구매예정수량)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 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 ◎ (적격자)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
- ◎ (규격서) 적격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
- ◎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
- ◎ (가격자료)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
- ◎ (최저가격)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 ◎ (최빈가격)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
- ◎ (가중평균가격)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 ◎ (업체제시가격)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

- ◎ **(협상기준가격)**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
- ◎ **(할인율)**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
- ◎ **(추가선택계약)** 물품의 본체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 계약에 추가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
- ◎ **(추가선택품목)**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품 계약에 추가로 계약 체결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별도구매 품목** :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 가능한 품목
 - **동시구매 품목** :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품과 함께 구매 가능한 품목
 - **설치비** : 별도구매 품목 또는 동시구매 품목 중 본품의 설치 및 본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부품교환, 추가 부속품 등으로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대하여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
- ◎ **(물품등록)**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
- ◎ **(계약연장)**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
- ◎ **(재계약)**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 ◎ **(차기계약)**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
- ◎ **(상품정보)**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

- ◎ (조사담당공무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
- ◎ (거래정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
- ◎ (판매중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
- ◎ (브로커)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
- ◎ (계약이행실적평가) 평가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
- ◎ (평가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



조달청

Public Procurement Service

VII

우수조달물품

1. 우수조달물품 지정	96
2. 우수조달물품 관리	98
※ 자주하는 질문	103
※ 용어 정의	112

우수조달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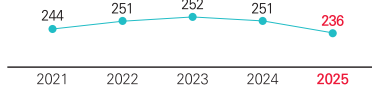
- 조달청은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심사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타 기업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과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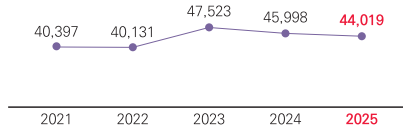
-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

[우선구매] 우수조달물품은 우선구매 (공공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제품에 해당(판로지원법 제13조)

우수조달물품 지정현황(제품수) (단위 : 개)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실적 (단위 : 억원)



▶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되려면?

- 신청대상 물품 :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소프트웨어 중에서 지정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Good Software)
 -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 시행한 R&D 사업 성공 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 우수제품 심사 및 선정 절차

신청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서식자료 • '26년도 신청기간 : 1.2~16(1차) 4.1~17(2차), 7.1~17(3차), 10.1~10.16(4차) ※ 매년 말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심사	• 1차 :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에서 제품의 기술 · 품질에 대한 평가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 • 2차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 심사
선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3년 연장 가능,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교부 *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통해 3년 추가 연장 가능(3+3)

▶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되면?

-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 총액수의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 있으며,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우수조달물품인증물’에 등록
- 전시회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보증기관과 은행권의 보증료율 감면 및 보증심사 우대 지원과 환율 우대, 외국환 수수료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우수조달물품

1. 우수조달물품 지정

▶ 개요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신기술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판매에 애로를 겪는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는 제도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운영

관련 규정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 신청대상

-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등록 후 7년(특허), 3년(실용신안) 이내)
- 저작권등록이 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만료 후 3년 이내 또는 3년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심사 및 지정 제외 대상

-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 신청인이 제3조의 신청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심사 중인 제품이 제4조의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설치 등에 관한 기술인 제품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준 4회 이상 1차 심사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
- 기존 우수제품과 용도 및 적용기술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제품(단,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
- 이동 또는 설치·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은 제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의약품, 농약 등
-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결정 가능)
- 적용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
-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른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
- 신청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심사위원의 인식여부 불문)

▶ 지정 절차



* 지정신청은 신청기간(지정계획 공고 참조) 내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류제출

* 규격 추가(상시접수, 지정심사 기간 내 심사), 기간연장(상시접수, 매월말 심사)

▶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정일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

▶ 지정 시 혜택

- 기본지정 기간(3년) 및 기간 연장(최대 3년)을 통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 *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우수조달물품 인증물'에 등록
- 전시회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마케팅 및 홍보 지원
- 보증기관과 은행권의 보증금을 감면 및 보증심사 우대 지원과 환율 우대, 외국인 수수료 감면(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2. 우수조달물품 관리

▶ 지정기간 연장(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연장하며, 아래의 요건을 중복으로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합산하여 연장 가능

-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신규 지정기업에 한하여 인정) : 1년
-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인 경우 : 1년
-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 1년
-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 1년
 - 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신청을 한 경우라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 이상인 소기업 또는 15% 이상인 중기업이면서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 1년
-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단, 신규지정 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경우) : 1년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등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경우 : 1년

※ 연장사유가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 가능,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 불가

▶ 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

-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 지정신청 시 제출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정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지정 직후 2년간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결과 '미흡'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
-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지정기간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우수제품 관련 성능미달이 확인된 경우
- 지정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이 수익 약정 등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의 제품관리나 납품관리 등을 주도하여 수행한 경우
- 협업체의 추진기업이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 규격서 수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격서 수정 가능

- 규격의 추가지정이 있는 경우
- 추가선택품목의 추가·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 한국산업표준 변경이 있을 경우
-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외국인 부품을 국산 부품 또는 직접 생산한 부품으로 변경하여 규격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
- 일부 지정취소를 포함한 지정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그밖에 경미한 사항, 불분명한 사항 및 모순된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규격추가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규격(모델)추가 가능

- 기존 우수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규격이 유사한 경우
- 추가 규격의 규격서가 지정규격의 기술 ·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면서, 동등 이상의 기술 · 품질 수준을 가진 경우
- 기존 우수제품에 대한 재심사,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기술심의회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합' 판단할 경우 규격(모델) 추가 가능

▶ 지정증서 재교부 및 반납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제5조 제3항에 따라 합병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반납
 - 우수조달물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우수조달물품 적용기술 등 유지

-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 권리 · 규격 · 자격 등 지정의 근거가 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정기간 및 계약이행(또는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관리
- 제반사항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 · 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수제품구매과로 통보
 - *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고조치 및 향후 지정 신인도심사 시 감점

▶ 지정 취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제품지정 취소 가능

- 신청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 (우수제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적용기술 중 하나 이상의 핵심 적용기술에 취소·무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4조 제3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 신청제품이 이동, 설치·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심사 이월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상이함이 확인된 경우
 -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 (우수제품업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도, 파산, 폐업, 청산 등이 확인된 경우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관계 법령의 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 우수제품 지정 규격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제품의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우수제품업체)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총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35조의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부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에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2회 이상 또는 제재기간 합산 6개월 이상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제품업체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 형사고발 가능

-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에 접촉하여 대가를 조건으로 지정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과정에 개입한 경우
- 우수제품 지정,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14쪽 참고)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제도 안내(교육자료)
 -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용설명서 A에서 Z까지(동영상)
 - 우수조달물품 지정 · 관리규정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 우수제품 길잡이 (070-4056-7228, 7144)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02-521-0014)

자주하는 질문(우수조달물품)



-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계약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주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우수조달물품)에서 알기쉬운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Q 신청하는 제품의 모델(규격)이 여러 가지인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 시 품명과 적용기술 및 용도가 같은 제품은 여러 규격이라도 1건으로 지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품명이 동일하더라도 적용기술이 다를 경우 분리하여 지정 신청해야 합니다.

Q 특허를 사용하여 지정 신청 시 신청인이 통상실시권자인 경우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 통상실시권자는 신청 불가하고, 전용실시권자의 경우도 전용실시권의 '실시내용'을 '특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양도, 생산 등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디자인등록은 '디자인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로 받아야 합니다.

Q 특허를 사용하여 지정 신청 시 법인으로 특허 권리자가 대표(또는 회사 직원)일 경우 지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 특허기술로 지정을 신청할 경우, 특허 권리자는 법인일 경우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업체가 타 명의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거나 공동권리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단,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Q 품질인증 없이 특허만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가요?

A 특허만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융합제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품질인증 없이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유효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품질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발급이 늦어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품질인증 없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만 제출하여도 지정 신청 가능한가요?

A 품질인증 기준이나 시험 장비가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해 1차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시험성적서의 인정기간은 2년입니다.

Q 법인회사가 아닌 지사(지점)인 경우에도 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지사(지점)는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지사(지점)로 지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4조 제6항에 특허·실용신안 등의 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청 예규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의 Ⅲ. 제출인별 특허고객번호 발급방법 및 기준에 따라 특허 등록원부의 권리자가 법인의 지사(지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Q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반제품은 반드시 임대 또는 자가 공장이 있어야 하며, S/W 제품은 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협업체'의 경우 참여기업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또는 생산현장실태 확인기준 충족으로 공장 보유를 갈음하고 있으며, 협업체의 생산물품이 중기간경쟁물품인 경우 중견기업은 협업체의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또는 OEM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불가합니다. 우수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며, 해외공장의 경우 신청제품의 직접생산 여부 및 품질·성능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신인도 심사 시 기술인증 등에 대한 평가는 신청 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한다고 하는데 동일제품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동일제품(품명)의 기준은 물품분류번호(8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규격(모델)별로 인증을 획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신인도 심사 시 '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우수제품신청서 마감일로부터 인증(등록)일 등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신인도 가점은 불인정되며, 사후관리를 통해 연장되는 인증인 경우에는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Q 해외수출로 신인도 가점을 받으려는 경우 수출 건수 및 수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해외수출실적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 기준 최근 5년간 수출 총액으로 차등 가점을 부여하며, [별지 제1호의 11서식(해외 진출 실적)]에 명시된 수출신고 필증(수출이행) 등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1차 심사 시 신청업체의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A 신청업체 당 발표시간 13분(제품설명 10분, 적용기술 발표 3분), 질의응답 시간 10분으로 총 2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Q 1차 심사 시 신청업체가 준비해야 할 것은?

- A** (심사 당일) 참석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요시 실물(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당일 출력본 제출이 원칙이나, 오전심사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일 발급분도 가능)
- (심사자료) 심사 시에는 신청 시 제출한 지정신청 서류로만 발표하므로 따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동영상 포함)를 만들어서 발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물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래픽, 음성, 자막 등이 제품의 순수 실물을 촬영한 동영상만을 인정하며, 이는 신청 시 제출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Q 신청업체의 신청제품 PT 시 조달청이 심사장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 및 제공 방식은?

- A** 신청업체가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한 신인도를 제외한 서류 일체를 업체 발표용 노트북에 다운받아 발표자에게 제공합니다.

Q 1차 심사 후 심사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A** 전 분야 1차 심사 종료 후 조달청에서 신청업체의 합격 여부를 공문으로 알려드리며,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업체 로그인 후 심사점수, 평가 의견 등의 상세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차 심사인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전 회차의 산정기준은?

- A** 업체 요청 시 기술·품질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세부품명기준)에 대해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합니다. 이전 회차 평가점수의 유효기간은 이번 회차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간 취득한 1차 평가점수만 유효합니다.

Q 특허적용여부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정신청 서류의 보완 범위 및 보완 방법은?

- A**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보완 가능하며, 신청업체의 해당서류 준비 미흡으로 인한 사항은 보완 기간 일지라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서류 보완은 지정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완 사항을 확인 후 보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Q 조달청에서 고시한 성장유망제품으로 지정 신청할 경우 심사 방법을 일반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 A** 심사 방법을 선택할 수 없으며, 성장유망제품에 해당할 경우 '성장유망제품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의 2 연장기간평가(舊 종합평가) 대상은? 연장기간 평가 대상이 되면 우수제품 지정이 어려워지나요?

A 연장기간평가 대상은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준으로 지정기간의 누적기간이 7년 이상인 우수제품 지정업체이며, 연장기간평가는 '최대 지정연장 허용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신규지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연장기간 평가를 받지 않고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본 지정기간 3년은 보장됩니다.

Q 지정 누적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준으로 중복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제외하고 기본 지정기간(1회당 3년)만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1회에 1개 제품만 신청할 경우, 3번째 지정기간이 끝나면 지정기간의 합이 9년이 되므로 4번째 지정신청 시부터는 지정신청할 때 연장기간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Q 연장기간평가를 통해 2년을 인정받은 경우 지정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2년이 보장되나요?

A 연장기간평가는 최대 지정연장 허용기간만 정하는 것으로 연장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실제 지정연장은 [별표6]과 [별표7]의 지정연장요건을 충족할 때 이루어집니다. 지정연장 신청은 지정만료일 직전 1년간만 유효하므로 지정만료전에 반드시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 규격서 확정, 계약요청 서류 준비 등 우수제품 계약 진행을 위해선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지정기간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지정 시작일을 선택할 수 있는지?

A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일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로 선택 가능합니다.

Q 우수제품의 계약(제3자 단가계약)기간은?

A 우수제품의 제3자 단가계약 기간은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지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우수제품의 수의계약 시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A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사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같은 항 제3호 바목 규정에 의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 하는 경우 구매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목 및 바목 참조)

Q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우수제품을 수요기관에 판매할 수는 없나요?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과 총액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우수제품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과 총액수의계약 납품 물품은 다른 규격이어야 합니다.

Q 계약된 우수제품이 지정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기 납품요구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실제 납품 완료 이전에 지정효력이 정지되었더라도 납품요구 시점에 우수제품의 효력이 있었다면 차질 없이 납품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 사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지정 시에 유효했던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 신청이 가능하나요?

A 종합쇼핑몰 상에 만료된 품질인증서가 표시되지 않을 뿐 계약신청은 가능하며, 별도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우수제품 지정 기간 중 총액계약(장기계속계약) 하였으나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2차 계약기간 중 우수제품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체결 당시 유효한 우수제품으로 수의계약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납품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 시 유효했던 우수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Q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 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는 계상되어 있나요?

A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는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계상)되어 있습니다.

Q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존 납품요구 건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시 수량 증가 및 연장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가 상호 동의하는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 납품요구건에 대한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납품요구 수량 변경에 있어 감량은 가능하나 증량은 불가합니다.

Q 할인행사 시 다량납품요구 할인도 중복하여 할인을 적용하나요?

A 할인행사의 할인율과 다량납품요구의 할인율을 비교하여 할인율이 높은 쪽이 적용되며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규격추가 신청 후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A** 기술심의회 심사를 거쳐 규격(모델)추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단순 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옵션 품목의 경우 규격추가 사항인가요?

- A** 규격추가가 아닌 규격서 수정사항에 해당하니, 분야별 지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규격추가 심사 시 업체에서 PT를 할 수 있나요?

- A** 제품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해 업체가 원하는 경우 PT(발표 3분, 질의응답 3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분야별 담당자에게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규격추가 중지 절차란 무엇인가요?

- A**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수제품 지정 취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규격추가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Q 규격추가 적합 판정 받은 후 해당업체가 수정계약 전에 취해야 할 후속 절차는?

- A** 규격추가 이후 추가된 규격에 대해 분야별 우수제품 지정 담당자에게 규격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규격서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계약은 불가합니다.

Q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 A** 기본 지정기간 3년에 납품실적 및 해외수출 등의 연장 자격조건 충족 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별표6]의 각 호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연장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Q 지정기간 연장신청은 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신청하면 되나요?

- A**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부터 만료일 사이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연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어 종합쇼핑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수요기관 물품구매 곤란, 계약 체결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계약 업무 진행을 위해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은 여러 자격을 동시 충족 시 1년에 한 번씩만 신청해야 하나요?

- A** 여러 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Q 고용실적 및 청년고용실적으로 기간연장 신청 시 인정 기간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인정 기간은 직전월을 포함한 6개월로 기산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정일: 2017.12.15, 연장신청일: 2020.10.21

지정일 인정기간: 2017년 11월

연장신청일 인정기간: 2020.4.1~2020.09.30

Q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 · 양수계약 체결 등을 한 업체의 경우 지정일은 언제로 볼 수 있나요?

A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 · 양수계약 체결 등을 한 업체의 경우 지정증서 재교부한 날을 지정일로 봅니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는 변동의 경우에는 변동일을 지정일로 봅니다.

Q 기간 연장 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요?

A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출력범위 : 전체)와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 고용인력 산정 시 외국인을 포함해야 하나요?

A 고용인력 산정 기준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내국인의 정규직 채용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고용인력 증가 실적'과 동일하게 외국인 및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Q 성능인증 등 품질인증서가 만료되었을 경우 기간연장 신청 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품질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NEP, NET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나 유효기간이 잔여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우수제품 지정 이후 NEP, NET를 취득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나요?

A '16년 7월 규정 개정에 따라 지정 이후 NEP, NET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Q 우수제품도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대응품이나 대체품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치 않습니다.

Q 조달업체의 기본정보(상호, 대표자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업체 정보 변경시 나라장터 상의 업체 정보 변경 · 알림과 함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로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

① 조달업체가 수정할 수 있는 항목(조달청의 별도 승인절차 불필요)

- 수정 절차 : 로그인 → 이용자 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자기정보 확인) → 해당항목 수정 시 완료
- 수정 가능 사항 : 영문상호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 수, 홈페이지, 대표자 E-Mail 및 핸드폰번호, 대표 대표자 여부, 공급물품 추가,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 공사 · 용역 · 기타업종의 대표업종여부, 공급물품 삭제, 제조물품 삭제, 공사 · 용역 · 기타업종 삭제, 입찰대리인 삭제

②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하는 항목(중요정보)

- 수정 절차 : 로그인 → 이용자 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 송신 버튼 클릭 → 관할지방 조달청에 송신 완료 → 시행문 출력 버튼 클릭 → 시행문 출력 → 관련 증빙서류와 시행문을 변경 신청한 조달청으로 우편(방문 가능) 송부 → 조달청에서 검토 및 승인

* 우편 송부 시 모든 서류(모든 페이지)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대표자(법인)의 인감이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승인이 필요한 항목 : 상호, 주소, 대표자, 공장주소 등 공장정보, 제조물품, 공사 · 용역 · 기타 업종, 입찰 대리인, 지사등록(법인 본사인 경우) 등기부등본사항 등

※ 승인이 필요한 항목 내용 중에서 주의할 사항

단, 상호, 주소, 대표자가 각각(또는 동시에) 변경되었을 경우 승인을 위한 서류 등을 접수할 필요 없음. 해당 내용은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조달청이 직접 내용확인 가능

② 우수제품 지정증서의 내용 변경

-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6호의 1서식]를 작성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우수제품 지정증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에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
- 관련 신청서류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서식자료 → [별지 제6호의 1서식]

다만, 주소변경은 지정증서 재교부사항은 아니며, 나라장터에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우수제품이라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구매해야 하나요?

A 우수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서 수익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중기간 경쟁대상 품목인 경우에도 수익계약이 가능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Q 구매책임자의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 규정은?

A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우수제품, 성능인증, NEP, NET, GS 등

Q 기술개발제품 구매금액에 '옵션' 구매금액도 포함되나요?

A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으로 계약된 옵션이면 구매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용어 정의

-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계약과 관련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조달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 조달관련 전체 용어집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교육 등 조달정보 → 공지를 조달용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수요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 ◎ (적용기술)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
- ◎ (기술심의회) 제18조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
- ◎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
-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조달청훈령 제2011호, 2021. 9. 27.)에 따른 협의회
- ◎ (품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 ◎ (세부품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 (협업체)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2개의 참여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
- ◎ (협업사업)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 · 생산 ·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 (추진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
-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기업

- ◎ (사전접촉) 기술심의회 개최 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우수제품 신청인 또는 신청 제품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
- ◎ (브로커)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제품 지정,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
- ◎ (이해관계인) 우수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우수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
- ◎ (추가선택품목)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
- ◎ (신규 지정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 이후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
- ◎ (기술소명자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
- ◎ (품질소명자료)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 · 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별표 1] '나'에 열거된 시험성적서 및 평가보고서에 해당하는 자료
- ◎ (선택부품)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중 기술 및 성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추가선택품목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호칭

VIII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1. G-PASS기업 지정 제도	116
2. G-PASS기업 신청방법	117
※ 자주하는 질문	120
※ 용어 정의	122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 조달청은 '13년부터 기술력은 우수하나, 해외조달시장 진출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교육,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라면 G-PASS 지정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 지정 제도란?

- 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 G-PASS기업에 지정되려면?

- **신청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중소기업
- **지정절차**
 - ① **신청서 접수** :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역량진단** : 기업 수출 역량조사 → ③ **1차 심사** : 신청서류 및 역량진단서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④ **2차 심사** :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최종 적합여부 심사
- **지정 신청**
 - ① **신청 기간** : 연중 상시(지정은 분기별) ② **현장 역량진단** : 신청서는 해외조달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 G-PASS기업에 지정되면?

- **해외마케팅 지원**
 -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연2회)
 - 해외조달시장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바이어 대상 소셜미디어 홍보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참여 우대**
 -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 수출 전략기업 육성사업
 - K-바이오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해외 시장개척단
- **해외조달시장 정보 제공 및 신인도 보증**
 - 글로벌 조달장터(ITC procurement map)를 통해 전세계 190여개국 입찰정보 제공
 -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 해외조달시장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정보제공
 - 영문 실적증명서 및 계약이행능력 실적평가 확인서 제공
- **국내조달시장 우대**
 - 우수조달물품제도 신인도 가점(+1점)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1점)
 - 물품,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우대(최대 +7.5점)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우대(최대 +5점)
- **수출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우대**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 수수료 및 보증심사 우대
 - 기업은행 : 환율 및 수수료 우대, 지원사업 연계
 - 한국수출입은행 : 하든 챔피언 프로그램 선정 가능 요건
 - 지식재산처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우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1. G-PASS기업 지정 제도

▶ 개요

개념 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해외조달 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13년부터 운영)

*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업체

관련 규정 G-PASS기업 지정 관련 규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 신청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중견기업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정기간 동안의 수출실적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재지정 가능

2. G-PASS기업 신청방법

▶ 지정 절차



※ G-PASS기업 지정심사는 분기별 1회(3월, 6월, 9월, 12월) 진행되므로 지정 목표로 하는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까지 서류 제출 및 보완 완료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
- (신청서류) 신청서, 신청기업 기초자료,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증빙자료 등
* G-PASS기업 모집공고 시 안내(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www.globalkoreamarket.go.kr>)
- (제출처)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이메일(contact@kep.or.kr)
- (문의처)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인증팀(02-6203-7718, 7727, 7748)
*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 현장 역량진단

- (대상) (신규)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재지정) 소재지 변경,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등
- (조사내용) 수출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여부, 해외 홍보자료 구비 여부,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 및 역량 조사 등
- (방식) 신청기업 현장 실사·점검 및 담당자 인터뷰 등
- (조사자) 조달청,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지정·관리 업무 수행사)

▶ 1차 심사

- (계량평가, 60점) 수출실적, 해외인증 및 국제특허, 해외마케팅 역량,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지원사업 참가경험 등 평가
- (비계량평가, 40점) 역량진단서와 신청서를 토대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 및 노력, 진출역량 등을 평가
- (통과 요건) 합계점수(계량+비계량)가 60점 이상이면서 비계량평가 항목 배점(40점)의 60% 이상(24점) 득점
- (평가자) 내·외부 심사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
- (가산점) 해외조달시장 벤더 등록, 벤처나라·문화상품·혁신제품 지정기업 등

▶ 2차 심사

- **(심사내용)** G-PASS 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 심사
- **(심사기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PASS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 1차, 2차 심사 후 지정 결과 및 지정기업 등급 발표(수출업무 담당자 이메일 및 팩스)

▶ 지정 제외 대상

-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정 시 혜택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나라장터엑스포,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발주기관 및 해외조달 벤더를 초청하여 G-PASS 기업에 상담기회 제공
-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해외 현지기업과 1:1 매칭 상담회, 전략기업 육성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등
- **(국내조달시장 가산점 혜택 / A, B등급만 해당)**
 - ▶ 우수조달물품 신청 신인도 가점(1점)
 - ▶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 “정책지원” 신인도 가점(1점)
 - ▶ 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우대(최대 +7.5점)
 -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우대(최대 +5점)
- **(유관기관 지원사업 혜택)**
 - ▶ 지식재산처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우대
 - ▶ 기술보증기금 : 보증심사 및 수수료 우대
 - ▶ 기업은행 : 환율 및 수수료 우대, 지원사업 연계 등
 - ▶ 한국수출입은행 : 하든 챔피언 프로그램 선정 가능 요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에 G-PASS기업마크 부착 / A, B등급만 해당)**

▶ 궁금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공공조달길잡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으세요(13쪽 참고)
 -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안내
 -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관련 해외조달정보센터 및 G-PASS 협회안내
 - G-PASS 지정 신청 매뉴얼 및 등급평가안내
 - G-PASS 안내동영상 G-PASS를 아시나요?
 -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계획 및 설명회



문의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42-724-7590, 6443)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길잡이 (042-724-6492, 6487)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G-PASS협회) (02-6203-7718, 7727, 7748)

자주하는 질문(G-PASS기업)



- G-PASS 지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주하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에서 알기쉬운 동영상 자료 등을 참고하세요

Q 수출실적이 없어도 G-PASS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수출실적이 없어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 ·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G-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기관에 바로 납품할 수 있나요?

A G-PASS기업 지정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우수 조달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선정하는 것으로 해외조달기관에 납품하고자 하실 때는 개별 기관의 벤더 등록 절차 및 계약 절차를 확인하고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Q G-PASS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A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프로그램은 G-PASS 지정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업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선정 시 G-PASS기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Q G-PASS기업으로 지정 받으면 모든 기업이 우수조달물품 신청 등 국내 조달관련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G-PASS기업 중 지정 후 A등급 또는 B등급 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신인도 가점,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C등급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수출실적이 없으면 A, B등급을 받을 수 없나요?

A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지정된 기간 내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도(해외조달시장 벤더 등록 또는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참석 등)에서 조건에 부합되면 B등급 이상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정서에 등급이 보이지 않아요?

A 지정서에는 등급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외조달정보센터(www.globalkoreamarket.go.kr)에서 기업이 직접 등급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Q G-PASS기업 등급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및 수출지원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 연도의 12월 말일까지(다만, 최초로 부여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 부여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말일까지) 유효합니다.

용어 정의

-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우신가요?
- G-PASS기업 지정과 관련한 규정에서 사용하는 조달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 조달관련 전체 용어집은 공공조달길잡이(조달청 홈페이지 → 공공조달길잡이 → 정보제공 → 교육 등 조달정보 → 공지를 조달용어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거점국가, 기관) 조달청에서 G-PASS기업에 각종 정보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되는 국가 또는 기관
- ◎ (수요기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등록한 기관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본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벤처창업조달기업) 「벤처나라 등록 물품 ·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 제4호에 따른 벤처창업 기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벤처나라 등록 물품 ·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나라”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 ·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 · 운영하는 벤처 · 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을 말한다.

2. “벤처나라”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벤처나라”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벤처창업기업제품”이란 벤처 · 창업기업이 생산 · 공급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의 추천과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정부조달문화상품)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통문화상품으로 등재된 물품

◎ (혁신조달기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참고자료

참고 자료

1. 「혁신」·「우수」·「벤처」제품 구매 혜택 안내	126
2. 조달청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관련 안내	130
3.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제도 안내	132
4. 조달기업 우대제도(가점 등) 안내	140
5. 벤처나라 관련 안내	
5-1.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143
5-2.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 기술·품질 평가서	144
6. 혁신제품 관련 안내	
6-1. 혁신시제품 신청 서류	145
6-2. 혁신시제품 평가가이드(공공성·혁신성평가 중심)	146
6-3. 혁신제품 평가면제 대상과 면제 항목	149
6-4.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안내	150
6-5.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신청 제출 서류	154
7. 우수조달물품 관련 안내	
7-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155
7-2.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157
7-3. 우수제품 지정연장 사유 및 기준	159
7-4. 우수제품 연장기간평가 평가기준	160
7-5. 우수제품 규격(모델) 추가신청 제출서류	162
7-6. 외국산 부품 사용제품에 대한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164
7-7.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 가이드라인	165
7-8.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수의계약 대상업체 확인방법	170
8.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관련 안내	
8-1.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제도 안내	174
8-2. G-PASS기업 신규지정 1차 심사서	175
8-3. G-PASS기업 재지정 1차 심사서	17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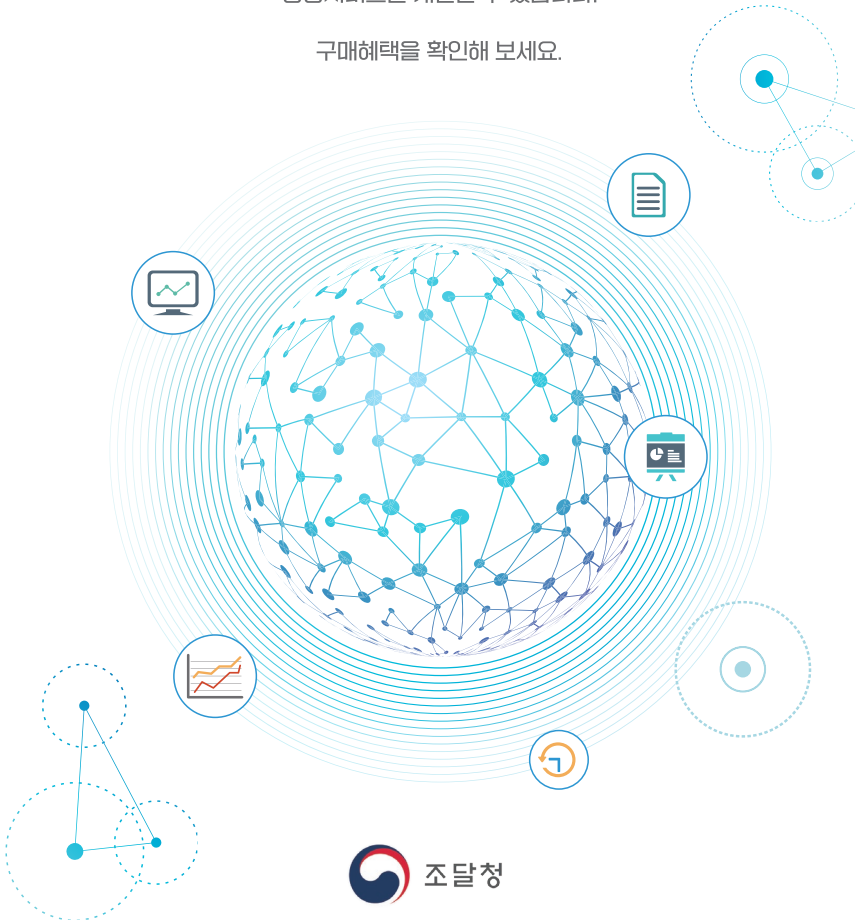
「혁신」·「우수」·「벤처」 제품 구매 혜택 안내



공공조달 「혁신」·「우수」·「벤처」 제품

혁신적이고, 우수한 공공조달 물품 구매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매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ppi.g2b.go.kr:8914 → 혁신제품 전용을 바로가기

혁신제품



Q 혁신제품이란?

-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입니다.('19년 도입)

(단위: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716	6,223	8,327	9,229	10,220	10,976

■ 지정대상 물품

- 대상물품 | 혁신성장지원, 국민생활문제, 미래대비 분야
- 지정요건 | 7년 이내 특허권리자(3년 이내 실용신안도 가능), 3년 이내 NEP 또는 NET, 시제품, 제조자
- 모집방식 | 공급자제한형, 수요자제한형, 스카우터 추천형

Q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혜택은?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금액의 제한 없는 수의계약 대상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초기 혁신제품 시범사용 가능
 - ※ ('26년) 국내시범구매 624억원, 해외실증 200억원, 시범구매 임차 15억원
- 구매담당자의 구매면책 제도적 장치로 혁신제품 구매 지원
 - ※ 조달사업예관한법을 제27조제4항·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구매면책
- 혁신제품 구매목표비율 및 기관평가 달성 가능
 - ※ (목표) '26년 약 10천억원, (기관평가) '24년 물품구매액의 중앙 1.4%, 지자체 1.9%, 공공기관 2.2%, 공기업 2.8% 구매목표 달성을 평가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
 - ※ 판로지원법 제13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혁신장터 플랫폼을 통해 혁신제품 검색 및 구매 가능(나라장터 계약 시스템 연계)
 - ※ 시범구매 성공 이후 혁신제품 단가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 지원
- 혁신제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연1회)



조달청

문의: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70-4056-7664, 7420, 7217), 혁신제품지원센터 (02-6951-4976, 5474, 4072, 4579)

※ 해당지역 각 지방청 공공조달 길잡이

종합쇼핑몰(shop.g2b.go.kr)을 통해 인증물에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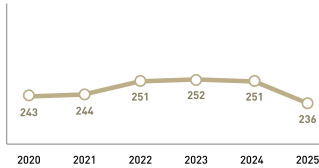
우수조달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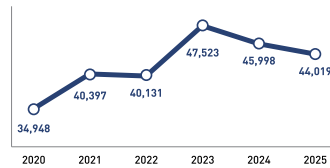
Q 우수조달물품이란?

-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6년 도입)

우수조달물품 지정현황(제품수) (단위:개)



우수조달물품 판로지원 실적 (단위:억원)



■ 지정대상 물품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소프트웨어 중에서 지정
 - 인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인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Good Software)
 -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 시행한 R&D 사업 성공 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중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제품

Q '우수조달물품' 구매 혜택은?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금액의 제한 없는 수의계약 대상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바목의 5)
- 구매담당자의 구매면책 제도적 장치로 우수조달물품 구매 지원
 - ※ 판로지원법 제14조 제3항: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구매면책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
 - ※ 판로지원법 제13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이상을 기술개발 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총 13종)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별도의 계약체결 부담 없이 간편하게 구매 가능
- 우수조달물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연1회)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70-4056-7228, 7144),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02-521-0014)

※ 해당지역 각 지방청 공공조달 길잡이

venture.g2b.go.kr →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을 바로가기

벤처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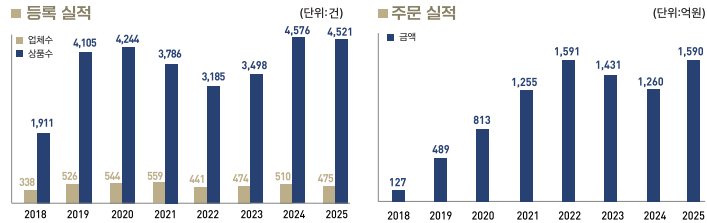


❓ '벤처나라' 란?

- 공공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판로개척 및 성장토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품물입니다.('16년 도입)

※ 기존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하여 공공기관 홍보 및 거래

'벤처나라' 상품등록 및 주문실적



■ 지정대상 물품

- 대상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벤처나라' 상품 구매혜택은?

- 2천만원 미만 소액 수의계약 가능 (나라장터 계약시스템 자동 연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인 경우 5천만원 이하
- 창업기업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중소기업창업법 제38조,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총 구매금액의 8%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 종합쇼핑몰에 없는 신기술, 융복합 기술 제품을 벤처나라에서 견적 주문(계약)을 거쳐 쉽게 구매
※ 벤처나라 플랫폼을 통해 벤처·창업기업 물품검색 및 구매 등 기관의 수요매칭 지원
- 벤처나라 제품 구매기관 중 우수기관의 담당자를 선정하여 포상(연1회)



조달청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070-4056-7665, 7193, 7506)

※ 해당지역 각 지방청 공공조달 길잡이

2

조달청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관련 안내

조달청은 납품단가 조정제도 관련 **규제개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칙

- ①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② 조정률* 3% 이상 증가
⇒ 동시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 각 계약 품목별 등락률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산정

문제점

기존 원칙만 적용 시 기업부담 증가, 물가변동 지연 · 불가

조달청의 노력

원자재 가격 **5% 이상** 급등 시,
90일 이내에도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했습니다.

조정을 다양성 인정

- ① 조정을 산출법 다양성 인정
 - * (원칙) 입찰시 세금계산서, 변동시 세금계산서
 - ** (개선) 입찰시 원가계산서, 변동시 원가계산서
 - 등 다른 방법 활용가능
 - * 가격자료 종류 변경은 가능하나, 시점 간 비교자료는 동일해야 함
- ② 대표성 가진 단체에서 실시한 방법
조합원사 등 일괄 적용

대표품목 결과 일괄적용

- ① 동일한 재질 · 모양 · 형태 · 용도의
품목에 대해서 유사품목으로 인정
- ② '대표품목'의 원가계산 등 가격산정결과
나머지 유사품목 일괄적용
- * 원자재 비율 감안 비례적용 등 허용

MAS 물가변동 조정 사례

Case1. 가격산정기준을 변경(거래실례 → 원가계산)하여 조정
(피복류, 금속제패널, 스틸그레이팅 등)

* 산정기준 : **계약기준 적용X(원가계산)** / 산정주체 : 개별업체 / 산정품목 : 모든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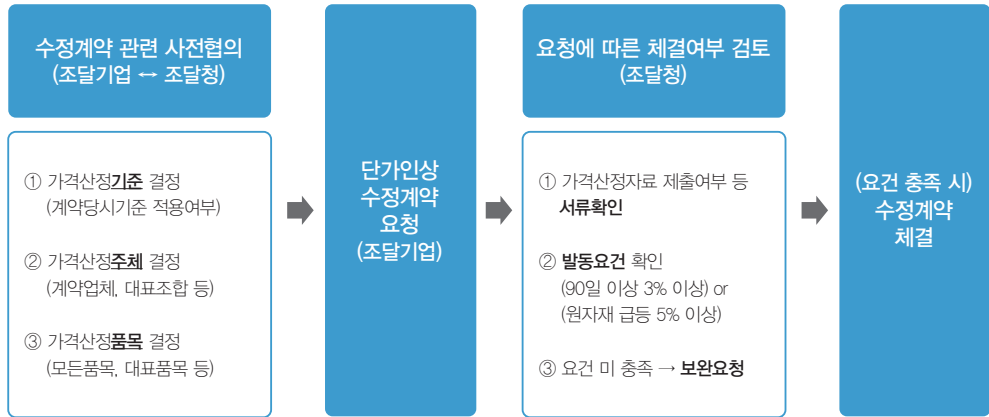
Case2. 가격산정주체를 변경(개별업체 → 대표자격)하여 조정
(도로명판, 안내판걸이구, 밸브류 등)

* 산정기준 : **계약기준 적용X(원가계산)** / 산정주체 : **대표업체** / 산정품목 : 모든품목

Case3. 가격산정품목을 변경(모든규격 → 대표규격)하여 조정
(가구류, 주철맨홀뚜껑 등)

* 산정기준 : **계약기준 적용X(원가계산)** / 산정주체 : **대표업체** / 산정품목 : 대표규격

[참고] 단가계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 과정



* (우수제품) 최초 단가계약 체결 시 '원가계산'을 통해 체결하여 물가변동 시에도 동일한 산정 방법으로 단가인상

** (MAS) 품목이 많은 계약특성 상 계약체결 시 일부품목의 거래자료(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계약 체결, 모든 품목에 대해 물가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가격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산정기준, 산정주체, 산정품목 모두 품목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3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제도 안내





0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관련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2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효과

- 조달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고객 만족도와 신뢰도 높임
-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 구매조달 효율성 향상
- 품질보증조달업체의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 으로 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



02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 기업인 으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 조건」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 검사 실적이 있는 자

● 신청 세부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신청자는 공고에서 정한 서류,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서, 품질보증 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제출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시스템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조달품질관리→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계획 공고→지정신청)

※ 신청 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신청서 상세'에서 자가진단 평가 후 '심사신청'

● 당해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기간

구분	접수기간
제1차	매년 02.01 ~ 03.31
제2차	매년 04.01 ~ 06.30
제3차	매년 07.01 ~ 09.30

※ 최초신청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3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

모든 품명에 대한 신청을 허용하되,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 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등급

등급	S급	A급	B급			예비 물품
			B+	B0	B-	
기준	750점 이상	700점 이상	670점 이상	630점 이상	600점 이상	550점 이상
유효기간	5년	4년	3년			1년

※ 예비물품 지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납품검사 면제' 혜택만 부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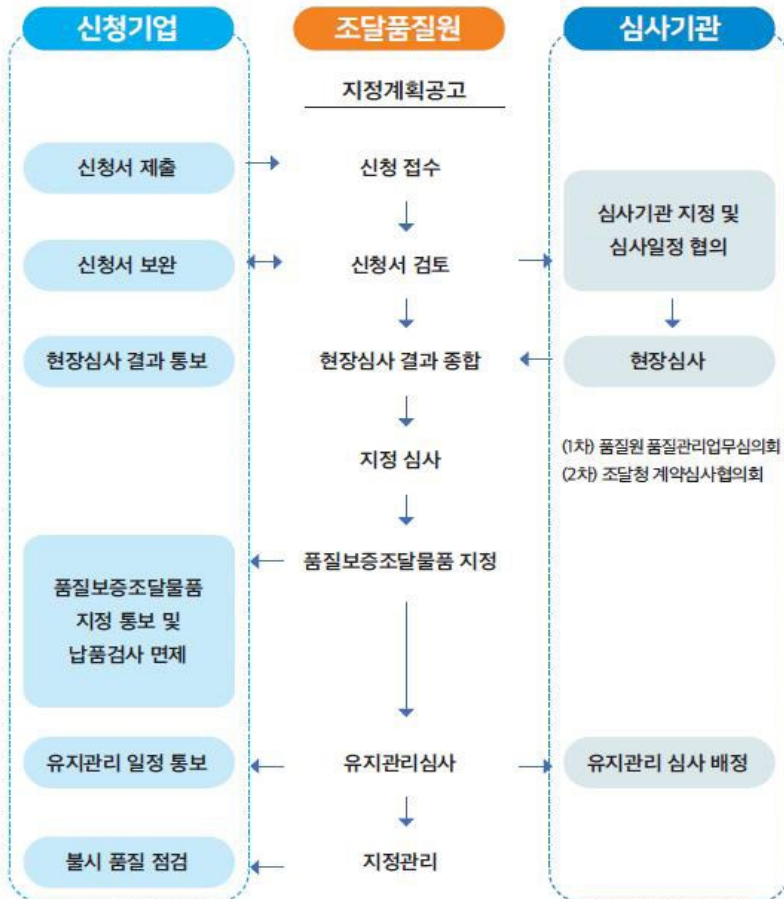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

- 01 납품검사면제(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 예비물품 1년) 단, 안전물자·주요공정 외부 위탁 생산 물품 등은 납품검사 면제 혜택 제외
- 02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 부여(A등급 이상 최대 2점, B등급 최대 1점) 및 품질소명자료로 인정
- 0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인증 가점 1.0점 부여
- 04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1.25점 부여
- 05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06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에 대해서 전용몰 운영 및 마크 부여

4 |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제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 절차





05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절차 및 방법

현장심사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를 담당할 외부 심사기관을 배정
- 심사기관은 심사팀을 구성하고, 심사 대상 업체와 심사일정을 협의·조율한 후 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
-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과 시험·검사 수수료 등의 비용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

지정심사

- 현장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 심의회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지정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품질보증 조달업체 성과





06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 및 배점

심사기준표

범주	NO	심사항목	배점	항목별 배점
1. 품질경영 시스템	1	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	200	25
	2	품질경영 관리		20
	3	법규관리		25
	4	기술관리		30
	5	위기경영		10
	6	문서관리		20
	7	공급자관리		10
	8	지속적개선		40
	9	교육		20
2. 생산공정	1	개발프로세스	500	50
	2	자재/부품관리		40
	3	공정관리		90
	4	작업현장관리		60
	5	설비관리		35
	6	포장/창고관리		50
	7	검사 및 시험		60
	8	품질정보관리		45
	9	부적합품관리		40
	10	고객불만처리		30
3. 성과지표	1	연구/개선성과	300	30
	2	생산프로세스성과		140
	3	신용평가/조달청실적평가		130
4. 신인도	1	신인도 평가	±10	+10~-10
전체합계(1,000점)			1,000	1,000

철저한 품질관리 유지

- 유지관리 현장심사(1년 주기) 및 지정기간 중 불시 품질점검 시행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증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지정번호 제 _____ 호

- 상 호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지정내용
 - 세 부 목 명 :
 - 세부품명번호 :
 - 등 급 :
 - 유효 기 간 :

상기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기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조 달 청



조달청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16-20(율곡동)
TEL. 070-4056-8022, 8025, 8091

4

조달기업 우대제도(가점 등) 안내

● 벤처나라 제품 혜택

조달제도 또는 적격심사 기준	가점 또는 배점기준 적용 내용	비고
혁신제품 제도	▶ 혁신시제품 지정대상 기준(상용화 이전 : 최초 매출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벤처나라 등록물품은 2년 이내까지 허용	
우수조달물품 제도	▶ 우수제품 기술·품질 심사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최근5년)에 대해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G-PASS기업 지정 제도	▶ G-PASS기업 신규지정 및 재지정 1차 심사 시 벤처나라 등록 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5점 부여	

※ 지방조달청 추천 받은 경우 벤처나라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혁신제품 혜택

조달제도 또는 적격심사 기준	가점 또는 배점기준 적용 내용	비고
우수조달물품 제도	▶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성공 판정' 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및 심사특례 적용	
G-PASS기업 지정 제도	▶ G-PASS기업 신규지정 및 재지정 1차 심사 시 혁신제품 또는 혁신시제품 등록 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5점 부여	

● 우수제품 혜택

조달제도 또는 적격심사 기준	가점 또는 배점기준 적용 내용	비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고도기술인증 : 조달우수제품인증 가점 1.5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고도기술인증 : 조달우수제품인증 가점 1.5점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고도기술인증 : 조달우수제품인증 가점 3.0점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고도기술인증 : 조달우수제품인증 가점 3.0점	

●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혜택

조달제도 또는 적격심사 기준	가점 또는 배점기준 적용 내용	비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정책지원 :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 (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가점 1.0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정책지원 :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 (G-PASS기업) 중 C등급을 제외한 기업 가점 1.0점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정책지원 :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 (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가점 1.0점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정책지원 :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 (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가점 1.0점	
물품 MAS 계약	▶ 물품 MAS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선택 평가항목에 G-PASS기업(C등급 제외)에 대해 최대 7.5점 포함 ▶ 물품 MAS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II, 평가항목에 G-PASS기업(C등급 제외)에 대해 최대 5점 포함	
용역 MAS / 카탈로그 계약	▶ 용역 MAS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선택 평가항목에 G-PASS기업(C등급 제외)에 대해 최대 7.5점 포함 ▶ 용역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 선택 평가항목에 G-PASS기업(C등급 제외)에 대해 최대 7.5점 포함	
우수조달물품 제도	▶ 우수제품 기술 · 품질 심사 시 G-PASS기업(C등급 제외)에 대해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조달청장 표창 혜택

조달제도 또는 적격심사 기준	가점 또는 배점기준 적용 내용	비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정책지원 : 조달청장 표창 받은 조달업무 우수업체 가점 1.0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정책지원 : 조달청장 표창 받은 조달업무 우수업체 가점 1.0점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정책지원 : 조달청장 표창 받은 조달업무 우수업체 가점 1.0점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정책지원 : 조달청장 표창 받은 조달업무 우수업체 가점 1.0점	
우수조달물품 제도	▶ 우수제품 기술 · 품질 심사 시 조달청장 표창 업체(최근 3년)에 대해 신인도 가점 건당 0.5점, 최대 1점 부여	

● 품질보증조달물품 혜택

조달제도 또는 적격심사 기준	가점 또는 배점기준 적용 내용	비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일반기술인증 : 품질보증조달물품 가점 1.25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일반기술인증 : 품질보증조달물품 가점 1.25점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일반기술인증 : 품질보증조달물품 가점 2.0점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 일반기술인증 : 품질보증조달물품 가점 2.0점	
벤처나라 제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 품질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제도	▶ 우수제품 기술 · 품질 심사 시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 ▶ 우수제품 연장기간 평가항목에 '품질보증조달물품(B등급 이상)' 포함	

● 전통문화상품 혜택

조달제도 또는 적격심사 기준	가점 또는 배점기준 적용 내용	비고
G-PASS기업 지정 제도	▶ G-PASS기업 신규지정 및 재지정 1차 심사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전통문화상품 등록 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5점 부여	

5. 벤처나라(143~144)

5-1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반드시 제출
2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	반드시 제출
3	▶ 상품설명서	반드시 제출
4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	반드시 제출
5	▶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 창업기업확인서 -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벤처기업의 경우 반드시 제출
6	▶ 기술·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인증에 적용된 특허 등의 등록 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포함)	벤처기업의 경우 반드시 제출
7	▶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기술 평가 증빙자료 있는 경우 제출
8	▶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등 -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로 제출	반드시 제출
9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제출
10	▶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약약서	반드시 제출

〈주〉

- 제출 서류는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것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 국민안전 관련 물자 세부품명: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 심사위원 평균점수와 가점의 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 심사 대상으로 인정

6. 혁신제품(145~154)

6-1 혁신시제품 신청 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 시기	비고
1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공고서 참조	반드시 제출
2	혁신시제품 규격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2호의2서식)	"	반드시 제출
3	-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지 제13호서식) -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지 제13호의2서식) - 인공지능(AI) 제품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지 제13의3서식) - 인공지능(AI) 제품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 제안서(별지 제13의4서식)	"	반드시 제출
4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서류 일체	"	해당시
5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다수인 경우 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	해당시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제출	"	해당시
7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일 경우 : 성공판정 서류 일체	"	해당시
8	기술·성능비교표 및 기존 제품 규격서 제출(별지 제3호서식)	"	해당시
9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해당시
10	한국특허진흥기술원로부터 발급받은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반드시 제출
11	매출 관련 서류(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	반드시 제출
12	인공지능(AI) 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	반드시 제출
13	국내산 부품 사용에 관한 협약서(별지 제20호 서식)	"	반드시 제출

〈주〉

1.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6-2

혁신시제품 평가가이드 (공공성 · 혁신성평가 중심)

1.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

① 혁신시제품 개념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의미를 거쳐 지정

지정 신청은 혁신장터 플랫폼
(<http://ppi.g2b.go.kr>)

② 유형2(혁신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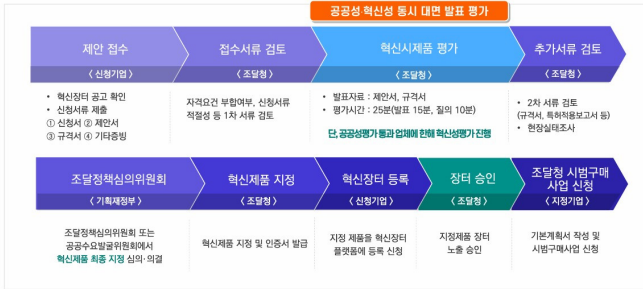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혁신시제품 공모 유형	내용
공급자 제안형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경제 분야, 정책지원 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동일 분야 중복신청 금지)
수요자 제안형(국인, 기관)	수요기관·국민 등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하고, 정해진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제품 공모
민간전문가 추천형	시급성 및 정부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한 분야 및 공급자제안형 중 지정 건수가 부족한 분야를 제품 추천 시 민간전문가에게 별도 공지 * 민간시장과 접목점이 넓어 기존 조달시장 밖의 제품 개발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함

3

1.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

② 혁신시제품 지정 절차



4

2. 혁신시제품 평가

① 혁신시제품 평가 개요

1 평가 항목

-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을 개선·개발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평가 방법

- 발표자료: 기업에 제출한 제안서, 제품설명(10매까지 이내) 및 규격서
- 대면평가시간: 총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만약용자의 경우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평가위원: 수요기관 + 기술전문가 9인 이내

평가에 참석하는 위원은 심사 당일 아래에 해당 하는 서류 제출 필요

- ① 좌석지정 4인용을 총 1개 이상 기업당첨자를 (심사 당일) 기한 내 제출, ② 신청서, ③ 표지용 봉투

3 합격 기준

- 공공성: 지표별 채점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평정 시 합격
- 혁신성: 최고, 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합격

기업 발표 > 기업 외장 > 공공성평가 > 공공성결과 확인
> 공공성 합격 기업 대상 혁신성평가 > 최종 점수 공개 결과 확인

2. 혁신시제품 평가

2 공공성평가 지표 (일반 제품)

지표별 재적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정 시 합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공공조달관련 기준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해당 제품·서비스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적합 여부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성 정도 - 유사기술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자구매기준이 특정 가능하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 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개발완성수준	분야적합성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율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환경 보호, 신산업 육성, 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TRL 안전성 규제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혁신시제품 평가

2 공공성평가 지표 (인공지능 제품)

2026년 공급지 제한형 4차 공모부터 적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공공조달관련 기준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부합 여부		해당 제품·서비스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적합 여부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 수요기관 요구사항 부합 여부
개발완성수준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율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환경 보호, 신산업 육성, 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신뢰성 규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여부 -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시스템의 안정성 여부 - 현장 적용 시 안전 여부, 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 능력, 예측 불가능한 오류나 장애 발생 시의 대응 체계, 부하 분산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운영적 능력 여부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 혁신시제품 평가

3 혁신성평가 지표 (일반 제품)

최고·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합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혁신적합성 (50점)	제품의 신규성	20	기준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준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	20	기존에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룸에 따른 혁신기술(핵심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개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의 실현 가능성성을 확인
시장성 (30점)	시장규모	15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	15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문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시범사용 수행역량 (20점)	수행역량	20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2. 혁신시제품 평가

➔ 혁신성평가 지표 (인공지능 제품)

2026년 공급자 제안용 4차 공모부터 적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혁신적합성 (40점)	제품의 신규성	20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	20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장점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발기술/보통 개발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인공지능 모델의 적합성 (40점)	데이터의 적절성 및 활용성	15	(적절성)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품질, 양 및 편향성 등 평가 (활용성) 데이터가 AI 모델의 목적과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여부
	성능 우수성	15	AI 모델의 성능 지표 평가 예)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지연시간, 처리량, 오류율, 포화도 등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	10	전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AI 기술이 차지하는 혁신적인 역할과 기술의 독창성 평가
시장성 (20점)	시장규모	10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	10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10

3. 평가 관련 기타사항

① 혁신시제품평가 면제

일부 항목 면제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 제5항 참고

①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 제14조(혁신시제품평가) 제5항

-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에 의한 **임시하기 또는 실증특례 제품**
- 「과학기술기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와 성공한 제품
- 혁신제품 추천위원회 추천한 제품 중 조달청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제품

② 재신청 시 이전 회차 평가 내용 참고

②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 제14조(혁신시제품평가) 제6항

- 동일 제품(동일분류번호 기준)의 재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차(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증적 기술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종전 평가에서 공공성 심사를 통과했거나 혁신성 심사를 탈락한 경우에는 공공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타 조달제도의 기 지정 규격(자사제품) 참고

③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 제14조(혁신시제품평가) 제7항

- 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일 경우 평가에서 기 지정되거나 계약된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12

6-3

혁신제품 평가면제 대상과 면제 항목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 제5항 관련

면제대상 해당 조항	면제대상 내용	면제 항목
제14조 제5항 제3호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Scale-Up형 사업을 통하여 성공한 제품	• ‘공공성 심사’ 전부 면제
제14조 제5항 제3호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시범구매연계형 사업을 통하여 성공한 제품	• 공급자제한형: ‘공공성 심사’ 항목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해결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 수요자제한형: ‘공공성 심사’ 항목 중 ‘공공현안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제14조 제5항 제5호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요자제한형으로 신청한 제품	• ‘공공성 심사’ 항목 중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제14조 제5항 제6호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주민의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성공한 제품 중 1년 이내 신청한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 공급자제한형: ‘공공성 심사’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 수요자제한형: ‘공공성 심사’ 중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14조 제5항 제7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품	• 공급자제한형: ‘공공성 심사’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 수요자제한형: ‘공공성 심사’ 중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14조 제5항 제8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	• ‘혁신성 심사’ 중 ‘혁신적합성’에 해당하는 ‘제품의 신규성’, ‘제품의 탁월성’(해당 면제항목은 만점 부여)
제14조 제5항 제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의1에 따라 운영되는 K-테스트베드 제품 중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를 받은 제품	• ‘혁신성 심사’ 중 ‘시범사용 수행역량’(해당 면제항목은 만점 부여)

6-4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안내

1.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① 혁신제품 시범구매 개념

②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국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수요기관은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

③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약칭:조달사업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시범구매 대상, 수요매칭 등)

④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절차 비교(시범구매 vs 자체-중앙조달)

구분	시범구매 사업 (조달청)	자체-중앙조달
근거규정	조달사업법 제27조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
구매예산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	각 발주기관 사업예산
구매절차	혁신제품 제출 → (업체)기본계획서 제출 → (기관)수요조사 → (조달청)업체와 수요기관 매칭 → 수의계약(중앙조달 업체) → 통용납품(수요기관 지정장소) → 업체대금지급(조달청 예산)	수요기관 자체구매 또는 중앙조달청(중앙기관 5원만 할 이상) → 수의계약 (조달청 업체 or 수요기관 업체) → 통용납품(수요기관 지정장소) → 업체대금지급(수요기관예산) *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부처는 의무 중앙조달청
구매횟수	(제품) 혁신제품 지정기간 내 1회 시범구매 가능(예외규정 존재) (기관) 동일 회계연도에 1회 시범구매 가능	혁신제품 지정기간 내 한차례만 없이 기관자체예산으로 구매가능

3

1.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③ 시범구매 사업의 특징

조달실적 인정가능

- 단순히 실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구매, 임차 사업("시범"구매)
- 실제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수요기관 매칭필요

- 혁신제품 지정 후 모든 제품이 시범 구매를 통해 계약되는 것이 아니며, 수요기관과의 매칭이 필요함

혜택

- 수요기관은 구매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설치비, 소모품 등 기타비용은 수요기관-기업 간의 협의 필요)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승인 이후 구매 계약 체결 → 사용 완료 후 원료보고서 제출
- 시범구매 판정결과 '성공' → 우수조달 신청 시 심사특례* 적용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시 기술·품질평가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5

1.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④ 시범구매사업 절차

01 혁신제품 지정

- 혁신제품을 지정(자청서 발급)
- 혁신장터 제품 등록

02 수요매칭

- (업체)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접수
- (조달청)연구개발 기본계획서 검토·승인
- (수요기관) 기관대상 수요조사 신청
- (조달청) 내부심의 후 수요매칭

03 계약

- (수요기관) 시범사용 업무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조달청, 조달연구개발) 수행계획서 검토·승인
- (조달청-업체) 계약(구매, 임대)체결
- (조달청)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04 사후관리

- 시범사용 중간점검 실시
- 시범사용 완료 보고서 접수
-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심의 및 결과 공개
- 혁신제품 소유권 이전 (기업-기관 합의)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혁신장터 등록 완료된
제품 대상

업체가 제출한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승인 후
기관·수요조사 및 내부심의를 거쳐 업체
와 기관 연결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접수 승인 완료 시 계약 체결
→ 업체는 수의계약에 따른 납품, 조달
청의 입찰에 따른 지급

시범사용 후 원료보고서 제출
→ 시범사용결과 판정
→ 성공 시 우수조달 신청에 심사
특례 적용

6



1.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⑥ 시범구매 참여 제외대상 *¹⁾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에 따름

○ 이미 시범구매 계약 중이거나 체결된 제품(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 한정된 예산 내에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혁신성 확인 기회 부여를 위해 한번이라도 매칭이 된 경우에는 시범구매 제외
- * 단, 수요매칭 금액기준 5,500만원 이하의 시범구매 참여대상은 제외하지 않음
- 구매/입찰/수출선도형 시범구매는 중복으로 간주하지 않음(각각 진행 가능)

○ 혁신장터에 제품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시범사용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 (혁신장터 상품등록 의무) 혁신제품에 대한 기본정보(제품명, 규격번호, 상품개요, 세부규격서, 납품조건, 업체제시금액)를 혁신장터에 등록하여 시범구매를 위한 제반조건 마련 → **납품조건과 상품금액에 이상 없는지 확인필요**
- (기본계획서 제출 의무) 기본계획서는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 시범사용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수요기관이 시범사용 신청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정보임 → **신청서 개념, 수요기관 특정 불가**

○ 이미 시범구매 계약 중이거나 체결된 제품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 다만,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수요기관 제안공모를 통하여 지정된 제품 중 과제를 제안한 수요기관은 시범구매 가능
- = 최초 시범구매시 과제를 제안한 기관과 매칭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과 1번 더 시범구매 가능

7



1.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⑥ 시범구매 참여 제외대상 *¹⁾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에 따름

○ 혁신제품 지정 유효 상태가 아닌 제품 (지정기간 만료, 지정취소 등)

- 혁신제품 지정 기간(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취소가 되는 등, 지정상태가 유효하지 않은 제품은 시범구매 참여가 제한됨

○ 조달청과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제품(물품식별번호가 동일) *국내 시범구매(구매, 입찰)에만 해당

- 조달청과 기 단계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상용화가 된 것으로 추정되어 시범사용을 통한 성능 확인이 불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 관련 규정상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계약제품 등 단계계약 된 제품은 우선구매 대상으로 별도로 총액계약을 추진하기 어려움

○ 혁신제품 지정 전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판단되는 제품

- 나라장터 계약실적 3건 이상이고, 계약금액 10억 이상

○ 기타 제외사유

- 지정기업의 사정으로 시범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업체가 부정당재제 중인 경우
- 기본계획서 보완요청 후,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8



1.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

⑥ 시범구매 수요매칭 기준

참여횟수와 범위

■ 업체

- 시범구매 참여횟수 : [구매] 지정번호 당 **1회만 매칭 가능***, [입찰/수출선도형] **참여횟수 제한 없음** (예산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가능성 있음)
- 매칭기관 수 : 1회 **최대 5개 기관**까지 매칭 가능

* 혁신제품 지정번호(예: 2025-001)를 기준으로 1회이며, 다른 제품(다른 기술)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다른 지정번호가 있는 경우) 추가 참여 가능 (기 지정번호의 단순 규칙추가 제외)

■ 기관 : 한 회계연도에 1회·1개 제품 시범사용 가능하며, 우대 또는 불리조건 매칭 배제 가능

- 우대조건 : 전년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 탄소중립 해당 시 상의를 통해 추가 매칭 또는 등 주요정책 관련 사업추진에 사용될 목적으로 시범사용신청 등
- 불리조건 : 해당 회계연도에 1회 이상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기관 사정으로 선정 취소/변경 이력이 있는 등

기관은 한 회계 연도에 한 번 참여가 가능하나, 우대조건 해당 시 2회까지 가능

- 우대조건 : 전년도 기관평가 최우수, 주요 정책 관련사업 추진 목적, 수출선도/입찰 시범구매 신청기관 등

■ 예산배정기준

- 제품별 적정타스트 수량, 기관(지역) 및 제품간 형평성, 제품의 수요확성성, 기관별 우대 및 불리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심의를 통해 제품별 기관별 예산배정금액 결정

제품단가, 테스트 필요수량, 선정기관 수 등에 따라 매칭 금액이 유통적으로 **일률적인 예산배정금액 선정 불가**

9

2. 혁신제품 시범구매(구매 사업)

① 시범구매 [구매] 사업의 특징

구매 사업	구매 사업이기 때문에 제품 납품 및 검사·검수 후, 제품 대금 일시 납부
9개 지원분야 (텍 1 필수)	· SI : SI 용복합, 디지털서비스, 공공 SI · 초혁신경제 : R&D 지원, K-바이오, 소부장 제품, 스마트 제조혁신 · 생활밀착 혁신제품 : 국민 생활 관련 혁신제품, 국민재난 아이디어 등을 통해 선정된 혁신제품 · 안전장비 : 소방, 경찰, 해경, 산림 등 공공서비스 안전장비 제품 · 재해·재난 : 재해 및 재난의 예방, 감시, 대응 등의 안전관리 기술 관련 제품 · 지역 혁신제품 : 지자체 지역문제 해결형 R&D, 지역 혁신기업 육성 사업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 · 기후테크 : 에너지산업,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모니터링, 스마트 농수산업, 미세먼지 저감제품 · 탄소중립 : 미래형 모빌리티 및 관련 제품, 온실가스 감축, 탄소 관측 및 모니터링, 넷제로블린지 혁신제품 · 순환경제 : 폐기물 재활용, 재생원료 사용, 친환경 소재 사용, 생태계 복원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간	· 제품 특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1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 가능 (예 : 납품 후 30일, 납품 후 120일, 납품 후 300일 등) · 시범사용 기간이란 수요기관이 제품을 사용하는 순사용기간만을 산정하며, 제작 및 설치기간 제외

2. 혁신제품 시범구매(구매 사업)

② 시범구매 추진일정

- 조달청은 **매 수요조사 공고 전까지 제출된 기본계획서**들을 모아 기관 대상 시범사용 수요조사 실시
- 혁신제품 지정규모, 수요자제한형 혁신제품에 대한 예산배분 등을 고려하여 매칭일정 및 규모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2026년도 시범구매사업 추진일정(안) * 예산사정, 검토기간 등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유형	구분	추진일정(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매 (국내)	기본계획서 제출(업제)	업체 기본계획서 상시 접수											
	수요조사 (수요기간)		2차 공고			3차 공고						4차 공고	
	수요매칭 (조달청)			매칭			매칭						매칭 (27년 예산)
	구매계약 (조달청)				매칭 후 약 2개월 소요			매칭 후 약 2개월 소요					

2. 혁신제품 시범구매(구매 사업)

③ 시범구매 기본계획서 제출 방법

기본계획서 접수(구매)

- 접수기간: 상시**
※ 공고문: 혁신장터 → 기업 → 혁신제품 시범구매 → 공지사항
- 접수대상: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 등록 후 기본계획서가 제출된 제품 중 수요 매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 추진 중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 다만, 매 분기별 수요조사 시작 전 접수된 기본계획서 검토를 통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에 따른 시범구매 제외 대상은 배제
- 접수서류: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 접수방법: 혁신장터(<http://ppi.g2b.go.kr>) 에서 접수**
→ 혁신제품 지정 후 상품등록 신청 → 기본계획서 등록신청 조회 → 등록 → 제출
※ 관련 서식 및 메뉴얼: 혁신장터 → 기업 → 혁신제품 시범구매 → 공지사항 → 「수정」혁신제품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상시 접수 안내(26.4.2) 공고 내 확인

3. 혁신제품 시범구매(임차 사업)

일정은 혁신장터 홈페이지 지속 확인 필수 !!

1 시범구매 임차 사업의 특징

임차 사업

- 임차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용이 진행되는 동안, **제품 대금 매월 분할 납부**
* 총 임차금액 (임차단가 × 임차기간) < 혁신제품 등록가액

4개 지원분야 (택 1 필수)

- 고가제품 : 신산업·신성장 분야 제품의 고가제품으로 시범구매 기회가 제한되어 임차가 필요한 제품(예 : 5억원 이상)
- 다기관 동시 실증 제품 : 다양한 환경(수요기관) 및 다수 사용자의 실증이 필요하여 임차가 필요한 제품
- 재임차 제품 : 각 출연연, 국립병원 등에서 공동활용 및 재임차가 가능한 성능개량 실험·연구장비
- 유지보수 부담 제품·구독서비스·기타 임차 필요제품 : 유지관리비 부담이 큰 제품 또는 소모성 제품으로 단기임차·구독서비스 방식 제품 및 기타 임차 필요 제품

시범사용 기간

- 임차기간 **1~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 가능(공고별 임차가능 기간 상이)
- 시범사용 기간이란 수요기관이 제품을 사용하는 **순사용기간**만을 산정하며, 제작 및 설치기간 제외

19

3. 혁신제품 시범구매(임차 사업)

2 시범구매 기본계획서 제출 방법

기본계획서 제출방법

1 접수기간: 혁신장터 공고문의 접수기간 참고

※ 공고문: 혁신장터 → 기업 → 혁신제품 시범구매 → 공지사항

2 접수대상: 혁신제품 지정 및 혁신장터 등록 후 기본계획서가 제출된 제품 중 수요 매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 추진 중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 다만, 제 분기별 수요조사 시작 전 접수된 기본계획서 검토를 통해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 24조에 따른 시범구매 제외 대상은 배제

3 접수서류: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공고문의 첨부파일 양식 활용

4 접수방법: 혁신장터(<http://ppi.g2b.go.kr>) 에서 접수

→ 혁신제품 지정 후 상품등록 신청 → 기본계획서 등록신청 조회 → 등록 → 제출

※ 관련 서식 및 매뉴얼: 혁신장터 → 기업 → 혁신제품 시범구매 → 공지사항 → "2020년 X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본계획서[임차 모집공고] 내 확인

20

4. 혁신제품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실증)

수출선도형 시범구매란?

-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해외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수요기관은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

신청분야(26~2차 공고 기준) *공고에 따라 신청분야(프로그램)은 달라질 수 있음(혁신장터 → 혁신제품 시범구매 → 공지사항 → 공고 참고)

신청분야(프로그램)	합업기관	내용	지원사항
발전사 공공수요 발굴형	발전 4개사	발전 4개사 해외법인이 운영하는 해외발전소에서 시험 사용을 희망하는 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실증	- 발전사 해외법인의 해외실증 수요 발굴 및 매칭 - 시험사용 제품 구매비 지원(조달청) - 제품 운송비 등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발전사)
해외 진출 수요 연계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KOTRA 해외무역관에서 해외 공공부문 수요가 확인된 제품을 시범구매하여 해당 국가에서 실증	- 해외 진출 관련 해외실증 수요 발굴 및 매칭 - 시험사용 제품 구매비 지원(조달청)
스마트 교통 수요 연계형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해외 사업현장에서 시험사용을 희망하는 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실증	- 스마트 교통 분야 관련 해외실증 수요 발굴 및 매칭 - 시험사용 제품 구매비 지원(조달청)
물·기후테크 혁신 수요 연계형	한국수자원공사	물·기후테크 관련 해외공공부문수요가 확인된 제품 을 시범구매하여 해당국가에서 실증	- 물·기후테크 관련 해외실증 수요 발굴 및 매칭 - 시험사용 제품 구매비 지원(조달청)
농업기술 개발협력 수요 연계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으로 추진 중인 실증 현장, 시험마련 농장에서 시험사용을 희망하는 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실증	- 농업기술 개발협력 관련 해외실증 수요 발굴 및 매칭 - 시험사용 제품 구매비 지원(조달청)
자체발굴 수요 지원형	(재)한국조달연구개발 혁신제품지원센터	해외 공공기관이 기업에게 직접 해외실증을 요청한 제품에 대해 시험 구매하여 요청기관에서 실증	- 기업이 자체 발굴한 해외실증 수요 확인 및 매칭 - 시험사용 제품 구매비 지원(조달청) * '고다40'형 사업 을 통한 국내 수출사업사실 정보 제공

25

6-5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신청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 시기	비고
1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등본),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 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규격추가 신청시점	규격추가 신청시점
2	혁신시제품 기존 · 추가규격 비교표(별지 제14호 서식)	〃	반드시 제출
3	혁신시제품 추가 규격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제12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4	구성대비표(별지 제14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5	- 신청제품목록(별지 제14호의3 서식) - 엑셀파일로 제출	〃	반드시 제출
6	혁신시제품 기 지정 규격서(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제12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7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다수인 경우 약정서(별지 제2호서식)	〃	해당시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출원 중인 경우 : 출원번호통지서 및 기술이전 협약서 제출	〃	해당시
9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일 경우 : 성공판정 서류 일체	〃	해당시
10	협업체일 경우 협업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해당시
11	한국특허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반드시 제출
12	매출 관련 서류(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	반드시 제출
13	혁신제품 지정(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2 서식)	〃	반드시 제출
14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	반드시 제출
15	인공지능(AI) 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	반드시 제출
16	국내산 부품 사용에 관한 협약서(별지 제20호 서식)	〃	반드시 제출

7. 우수제품(155~173)

7-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분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가. 신청인	1	•중소기업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필수 제출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필수 제출 (시스템 확인)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필수 제출 (시스템 확인)
나. 신청 제품	4	•기술소명자료	
		특허 및 실용등록신안	권리증서(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GS인증 적용 저작권등록 SW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제품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혁신제품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 혁신제품 규격서
	5	•품질소명자료	
		인정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규격서(성능인증 및 K마크인 경우)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자료 인정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 또는 그 밖에 품질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만, 고가의 시험비용이 수반되고 제품 품질의 변동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경과한 시험성적서라고 하더라도 인정	

분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나. 신청 제품	6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해당 시 반드시 제출
	7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인서(별지 제1호의 14서식)	필수제출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해당 시 제출
다. 신청	8	신청모델(규격)내역(별지 제1호의 12서식)	필수제출
	9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4서식)	필수제출
	10	구성대비표(별지 제1호의 5서식)	필수제출
	11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7서식)	필수제출
	12	기술 · 성능 비교표 (별지 제1호의 9서식)	필수제출
	13	약정서, 기술적용확인표 (별지 제1호의 10서식, 별지 제1호의 8서식)	해당 시 제출
	14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1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15	신인도심사서(별지 제2호의 5서식)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제출
	16	별표 5 서식에 대한 증빙서류(연장기간평가 기업에 한해 제출)	필수제출
	17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별지 제1호의 3서식)	필수제출
	18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필수제출
	19	기술이력서	필수제출
	20	특허평가보고서	해당 시 제출

※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우수제품 - 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단, 8번은 엑셀파일로 제출)

〈주〉

-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것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가능)
 - 가의 2호, 3호의 서류는 조달청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유효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발급받아야 함
 - 나의 4호 서류는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유효한 기술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나의 5호 서류는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제출하며, 특허·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여야 함
- 기술 · 품질 소명자료는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보완 · 보관 등의 이유로 파일형식과 용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 1차 심사 이후 제출하는 특허적용확인서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를 의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지정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 협업체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식별번호는 추진기업에게 부여
- 위에 명시된 기술 및 품질소명자료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한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된 물품임에도 하드웨어에 대한 품질소명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반려
- 기술이력서는 '25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공고>에 반영된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
- 지정신청 제품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조달청 공고)에 해당할 경우 공고에서 정한 기술 · 품질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의 특허(2개 이상일 경우 핵심기술 특허 1개만 해당)가 적용된 신청제품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은 'SMART 5 특허 평가보고서'를 제출(단, 규정 제4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실용신안),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신청제품은 해당없음)

7-2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필수제출
2	우수제품 지정 평가자료	필수제출
3	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필수제출
4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제출
5	우수제품지정기간 연장신청서	필수제출
6	- 기술소명자료 - 적용된 기술의 진여 유효기간(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사본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 -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유효 시험성적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당초 시험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품질소명자료 - 품질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 품질인증서 사본 - 품질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다음 중 택1하여 제출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검사합격증명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유효 시험성적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증서 사본, 당초 시험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필수제출
7	최근 1년(3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8	해외 진출실적	
9	고용인원 증가 실적	
10	기술개발 투자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 일체 (별지 제3호의 4서식 참조)	
11	-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 일반물품 중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으로 갈음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조달품질원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름	필수제출

번호	서 류 명	비고
12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필수제출
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필수제출
14	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	
15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필수제출

※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우수제품 - 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연장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것에 한하며,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최근 1년(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 수출실적, 고용인원 증가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경고·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를 받았거나,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연장심사에서 제외 가능
5. 위 [별표3]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 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접수 기한〉

- 지정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만료일 내에(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온라인 접수) 신청
 - *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난 이후 연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 요함
 - 심사는 수시접수 후 조달청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사를 거쳐 결정

7-3

우수제품 지정연장 사유 및 기준

호	연장 사유	연장기간	기준
1호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신규 지정기업에 한하여 인정)	1년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일
2호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 이상인 경우	1년	
3호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나.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	1년	
4호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나.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1년	
5호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지정일 기준)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나.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소기업 및 4% 이상인 중기업	1년	
6호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단, 신규지정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3%이상인 경우)	1년	
7호	지정기간 내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등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경우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공모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 통합 공모사업(smtech.go.kr) - 이외 기관 자체 시행 기술개발 관련 공모사업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한 공모사업의 내용은 사업공고서 상의 지원 내용에 '기술개발'로 명시될 경우에 한해 인정)	1년	지정 기간 내

※ 연장사유가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한다.

※ 가산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품명은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의미한다.

※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 관련 소송 등에 승소한 경우 우수제품 업체가 지정기간 소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정연장 신청 시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제7호 관련 제출서류 : 사업공고서, 해당 사업의 참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업결과보고서, 주관기관의 공문, 인증 등)

7-4 우수제품 연장기간평가 평가기준

구 분		적용범위
대상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제품
평가 항목	수출 (각 항목 인정)	• 아래 각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하여 3% 이상일 경우 - 최근 1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1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400만불 이상인 경우
	고용 증가율	• 아래의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의 평균이 6% 이상인 경우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4서식에 따른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B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평가 기준	• 위 평가항목 충족 수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정연장 허용	

〈주〉

1. 평가항목 중 '수출'의 기산일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항목 중 '고용 증가율'의 계산방법 및 증빙은 아래 산정기준을 따른다.

※ 고용 증가율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로 판단

(1) 고용 증가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해당년도 최근 6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 $\frac{\text{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가산 최근 6월간의 고용인원합산}}{6(\text{월})}$

직전년도 6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 $\frac{\text{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 부터 그 직전년도 6월간의 고용인원합산}}{6(\text{월})}$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1. 2. 80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08	'19.08	'19.10	'19.11	'19.12	'20.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0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08	'20.09	'20.09	'20.11	'20.12	'21.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text{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text{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와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아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신청업체는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제안요청 - 건강보험가입자정보조회 - 조회기준(종가입자), 업체명(전체 선택) 검색 후 '검색화면'을 캡처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평가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도 함께 제출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출력범위: 전체) 서류에는 입·퇴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인원 산정 시 중도 퇴사자는 제외(단, 자격상실일이 해당월 마지막일자인 경우도 중도퇴사자로 봄)되며, 해당월의 증빙서류에 등재된 인원만 산정한다.

3.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투자비용'의 기산일을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4서식에 따른다.

4. 평가항목 중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

7-5 우수제품 규격(모델) 추가신청 제출서류

분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가. 신청인	1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필수 제출
	2	우수제품 지정 평가자료	
	3	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4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서	
	6	우수제품 지정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	
	7	구성대비표	필수제출
	8	신청제품 목록(엑셀파일)	필수 제출
	9	모델별 적용내역	
나. 신청 제품	•기술소명자료		필수제출
	10	특허 및 실용등록신안	권리증서(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GS인증 적용 저작권등록 SW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제품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혁신제품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 혁신제품 규격서
	•품질소명자료		
	11	인정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 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법제18조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12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6 서식)	
	13	변경된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필수제출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필수제출

분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다. 신청	15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필수제출
	16	•중소기업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필수제출
	17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필수제출
	18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필수제출
	19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약약서	필수제출
	20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 및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2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필수제출

※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우수제품 - 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단, 8번은 엑셀파일로 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규격 추가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것에 한하며, 신청서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위 표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5.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에 '특허기술 적용여부'가 일부적용 또는 미적용으로 체크되거나 '특허기술 적용수준'이 일부적용으로 체크된 경우 규격추가 제외
6. 제출서류의 보완 · 보관 등의 이유로 파일형식과 용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규격추가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8. 협업체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식별번호는 추진기업에서 부여받아야 함

7-6 외국산 부품 사용제품에 대한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1조(심사의 이월·보류) 제1항 제2호 관련

* 모든 증빙자료는 국문이 아닐 시 공증 번역본 추가 제출

No.	예외사항	제출 서류
1	국내 기업의 해외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장 소재국이 발행한 관련 증빙자료 또는 국내 공장의 해외공장이라는 신빙성 있는 자료 (소재지 · 업소명 등 포함) * 폭넓게 인정
2	신청업체의 OEM 제조	OEM 계약서
3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국내산, 외국산 품질이 비교 가능한 시험성적서
4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의 의견서
		권한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의 의견서
		전문 저널 기사 * 단순 언론보도 등 허용 불가
		이외 관련 전문성이나 권한이 인정되는 증빙자료
5	원산지 검증을 받은 경우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6	기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증빙자료

7-7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 가이드라인

1. 심사 개요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지정 기술심의회’에서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를 신청한 제품의 기술·품질을 심사
- 건축자재, 토목환경, 전자기기, 전기조명, 기계장치, 정보통신 등 심사분야별로 5~10인의 외부 전문심사위원(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연구원 등)으로 구성

2. 심사 기준 및 절차

- 일반제품, 성장유망제품, 가구제품, SW,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규격추가 등 각 심사별로 마련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점수 부여방식 심사
 - 일반제품, 성장유망제품 및 가구제품 심사가 해당
 -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와 조달청이 평가한 신인도 점수(3점 만점)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이면 1차 심사 통과
- 적절·부적절방식 심사
 - SW,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및 규격추가 심사가 해당
 - 항목별로 적절·부적절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하면 1차 심사 통과
- 사전검토 및 발표·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하며, 나라장터를 이용

3. 심사 방법 및 유의사항

가. 사전검토(심사일 전일까지)

○ (사전검토 절차) 나라장터(평가위원) 로그인 → 조달평가 → 평가수행 목록
→ 사전심사 안내 → 사전심사 준비 → 사전검토서 작성 및 제출

○ 사전검토 시 유의사항

- ① 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서류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심사당일은 발표와 질의·응답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검토 요망
- ②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한다는 업체들의 불만이 높으며, **사전검토서 미제출 시 심사에 참여하지 못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③ 사전검토서에 **‘질의할 내용 또는 확인 필요 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 실시(심사당일)

○ 심사방법

- ① 신규지정 심사 : 대면심사
- **발표 12분 + 기술설명 3분 → 질의응답 10분** → 심사위원 토론 5분 이내
※ 업체가 25분 내에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도록 심사 운영
- ② 규격추가 심사 : 대면 또는 서면 심사
- **발표 3분 → 질의응답 3분**
※ 발표 여부는 신청업체가 선택하며, 미발표 시에는 서면으로 심사

○ 심사 시 유의사항

- ① **적용기술의 우수성과 신청제품 전체 모델에의 반영 여부(비중)**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제출된 **품질소명자료** 내용으로 신청제품 전체 모델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의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설명 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루어 짐작하거나 확대·축소 해석하지 말아야 함
- ④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위주로 **전문성** 있게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 경영 애로, 마지막 회차 심사 등 감정호소에 현혹되지 마시고 평가
- ⑤ 심사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1인 2질문 내외, 2분 내외로 질의·응답 진행 권장
- ⑥ 심사대상 업체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⑦ 감정섞인 발언이나 자백을 유도하는 질문방식은 삼가 바랍니다.
※ 강압적 질문, 성의 없는 태도 및 정제되지 않는 모습 삼가
- ⑧ **심사의 공정성·성실성을 위반하는 경우 심사위원 사후평가를 통해 벌점 부과**

○ 본질적 기술과 주변 기술의 구분 기준

- ① (**본질적 기술**) 제품에 적용된 기술 중 **대표기술**이 신청제품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성**이 있는 기술
- ② (**주변 기술**) 제품에 적용된 기술 중 **대표기술**이 신청제품의 본질적 기능이 아닌 **단편적 기능 개선, 유지·보수 편의성** 등을 위한 기술

○ 본질적 기능 판단을 위한 심사위원 토론(5분 이내) 운영

- ① 대표기술이 **본질적 기술인지 주변 기술인지에 대한 논의만 진행**
※ 제품 또는 기술의 우수성이나 장·단점에 대한 평가는 제외
- ② 한분이 주도하여 다른 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 삼가

○ 종합의견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종합의견은 해당업체에게 공개**되며, 심사 **탈락 시** 차기 심사에서 전회차 심사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을 필수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어 **평가업체에게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심사점수와 종합의견 내용간 정합성**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의견은 부정적이나 점수가 높은 경우 높은 점수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어 공정성 시비 소지
- ③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❶기술의 **핵심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하거나 **고투리**를 잡을 때, ❷**핵심기술** 또는 **핵심성능과 관계없는 항목에 대한 과도한 시험성적서 요구**, ❸**제출된 자료에 내용이 있음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제출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심사함)** 등이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심사와 관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자세한 이용방법**은 개인메일로 보내드린 **평가위원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품질 검토는 **[붙임1]의 심사자료 검토요령**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 관련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심사담당자)	문의처
건축, 토목환경(조윤수), 기계장치, 사무기기(김용현)	조성관 042-724-7461
과기의료, 정보통신, 지능정보, 화학섬유(장성훈), 전자기기, 전기조명(김보람)	고나실 042-724-7489

-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3조 및 [별표3]에 따라 **평가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붙임2] 참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기피·제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참조)

붙임1

심사자료 검토 요령

- 신청업체의 제출 자료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제품규격서**에서는 품질소명자료(시험성적서 등)에 제시된 **품질의 우수성이 ‘6-2-1. 품질기준’ 항목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검토 시 우수제품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 이외에도 **아래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관련 정보** : 특허정보넷(<http://kipris.or.kr>)
 - **유사 우수제품 정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g2b.go.kr>) > 인증몰 > 우수조달물품)

번호	심사자료	주요 내용
1	신청모델(규격) 내역	신청모델 내역 및 모델별 기술·품질인증 적용 여부
2	제품설명서	발표자료
3	제품규격서	계약서에 첨부될 ‘우수제품 규격서’
4	기술성능비교표(자사/타사)	자사 및 타사(우수제품, MAS, 일반제품) 제품과 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등 비교
5	기술 및 품질인증* 첨부파일	특허증, 원부, 공보, 인증서, 종합평가보고서 등
6	시험성적서	5번 관련 시험성적서나 추가로 시험한 성적서
7	구성대비표	특허의 청구항 내용과 신청제품을 구체적으로 대비
8	기술적용확인표	제품에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납품 시 확인할 수 있는 방식
9	약정서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
10	법적 의무인증/지침 자기확인서	신청제품과 관련된 법적 의무인증/지침이 있는 경우 그 증빙서류
11	기술이력서	현재 신청한 기술이 개발되기까지의 이력
12	기타 자료	외국산 부품 사용에 관한 약속서, 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등

- * 1) 기술 : NEP, NET, 특허, 혁신제품, GS인증(저작권), 연구개발사업 제품 중 1개 이상
 2) 품질 : 성능인증, K마크,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인증, ICT융합품질인증제품, GR인증, GS인증(저작권 없어도 신청 가능) 중 1개 이상
 (※ NET, 특허로 신청한 경우 필수 제출)

7-8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수의계약 대상업체 확인방법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수의계약 대상업체 확인방법

'23.6.22. 우수제품구매과

□ (지정대상) 원칙적 중소기업

○ 「조달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 부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
 ⇒ 중소기업확인서는 발급되나 확인서 상 동 내용 확인 불가(해당업체에게는 안내됨)하므로 “유예여부 상세내용”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중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선정**(산자부 소관)함

□ 제한적으로 중견기업 지정 가능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중기간경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중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 제출서류 :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 * 「판로지원법」 제8조의3 제1항 및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특례대상 요건(「판로지원법」 제8조의3의 중견기업의 중기간경쟁 참여 특례)

- ❶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 3년 이상 중기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 ❷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 ❶ and ❷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초기중견기업"이라 함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일반경쟁물품)

- 특례대상 중견기업 적용근거(「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 및 「중견기업확인요령」 제3조 제2항)
 - ❶ 기목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3년) 만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❷ 나목 :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 ❶ 또는 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제출서류 : 중견기업확인서

* 확인서 내용에 "특례대상 중견기업 확인"란에 "해당"에 체크되어 있어야함

☞ 「중견기업법」 상 '특례대상 중견기업'은 우수조달제품 지정 대상
☞ 단, 중기간경쟁제품에 대한 지정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판로지원법」 제8조의3의 중기간경쟁 참여 특례 중견기업만 해당

□ **협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조(정의) 제7호~10호, 제5조(협업승인 등)
- (협업체)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

- (추진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 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 **제조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협업 불가**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제출서류: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 또는 특례대상 여부 확인)

- (협업제한)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만 협업가능**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계약대상] 중소기업이 원칙, 예외사항 없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의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은 기업**’ 포함

- 단, 해당 기업은 「중견기업법」 상의 ‘중견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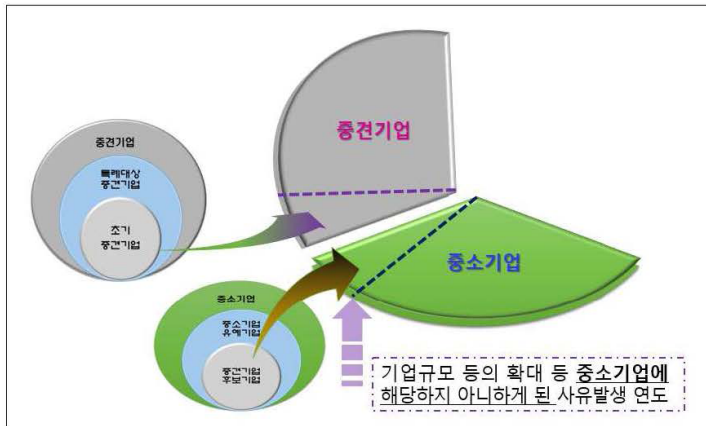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 확인 필수**

- (협업제한의 계약)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이유불문하고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 또한, 협업기업도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기간경쟁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필수(일반경쟁인 경우 제조등록)

□ 우수제품 지정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비교



◆ 소관 및 확인서 발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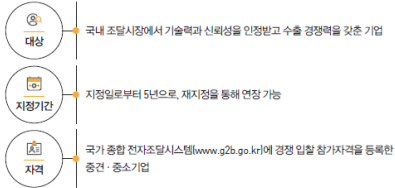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확인서*, 초기중견기업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SMPP에서 발급정보 조회
 - ※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후보기업
 - * 중견기업 정보마당 신청 및 발급, 발급정보 조회

8.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174~176)

8-1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제도 안내

G-PASS기업 지정 · 관리제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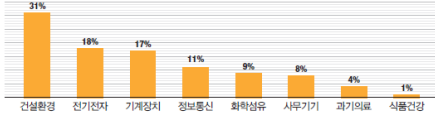
최근 5년간 G-PASS기업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정업체	832	1,022	1,114	1,263	1,374
수출실적	7.4억 불	12.5억 불	15.1억 불	16.3억 불	12억 불

* 24년 9월 기준

지정기업 업종현황

- 25년 9월 기준 1,485개 기업
- 주요 업종: 건설환경(31%), 전기전자(18%), 기계장비(17%)



G-PASS기업 지정 혜택



G-PASS기업 등급 안내 (2026. 1. 1.부터 적용)

G-PASS기업 지정 신청 방법

지정 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
- 역량심사**: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역량심사 실시
- 1차 심사**: 신청서류, 역량심사결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2차 심사**: 조달청 계약심사회의에서 1차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

지정 신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G-PASS기업 지정은 분기별 시행
- 신청 방법**: G-PASS기업 신청 서류를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
- 신청서는 해외조달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정신청 및 문의처

-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 이현정 실무관 042-724-6443 | h0204@korea.kr
- 송경선 실무관 042-724-7590 | paulsong@korea.kr

G-PASS기업 등급 분류	G-PASS기업 지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별 등급을 분류하고 매년 재평가 실시
등급 분류의 목적	G-PASS기업 지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을 위한 동기 부여
등급 분류의 기준	수출실적 또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 노력도를 평가하여 등급 분류

등급	등급 판단 기준	
	수출 실적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A등급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500만불 이상	- GSA MAS 계약납품 10만불 이상의 해외 조달계약 체결 - 다음 각 호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1. 해외조달시장 수출촉진사업 2. 해외조달시장 시장개척단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G-PASS 지정받고에서 정하는 사업
B등급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GSA MAS 등록 - 해외조달시장 공급사번센터로 등록된 실적 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 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 - 다음 각 호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1.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2. 해외인도 협력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G-PASS 지정받고에서 정하는 사업
C등급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10만불 미만	없음
등급 유효기간	등급이 부여된 날부터 해당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유효하다. 최초로 부여된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 부여된 해의 다음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함	
등급 확인 방법	해외조달정보센터에서 로그인 한 후 기업정보에서 등급 확인 및 등급 확인서 발급 가능	

8-2

G-PASS기업 신규지정 1차 심사서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세부 배점					
계량 (60점)	해외 조달시장 진출노력	최근 3년간 수출실적	15		500만불 이상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1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1만불 미만	
					15	13	11	9	7	
		해외인증 보유	12		2종 이상		1종		없음	
					12		9		6	
		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12		2건 이상		1건		없음	
					12		9		6	
		해외마케팅 자료 보유	9		3종 이상	2종	1종	없음		
					9	8	7	5		
		최근 3년간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지원사업 참가경험	12		3회 이상	2회	1회	없음		
					12	9	7	6		
비계량 (40점)	해외 조달시장 진출의지 및 가능성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및 수출계획 이행가능성	1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3	10	8	6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관련 이력	1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3	10	8	6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및 실태조사 검토의견	1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7	5	3	
		심사위원 평가의견								
		총점			100					
		가점 (택1)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또는 해외조달 입찰제안서 제출		3					
			유관기관 사업참가		5					
벤처창업조달기업			5							
정부조달문화상품지정기업			5							
혁신제품기업			5							
최근 1년간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 이수 이력			최대 5점	2~3회 : 1점, 4~5회 : 2점, 6~7회 : 3점 8~9회 : 4점, 10회 이상 : 5점						

8-3 G-PASS기업 재지정 1차 심사서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점수	세부 배점				
계량 (70점)	해외 조달시장 참가실적 (50)	입찰제안서 제출	10		6회 이상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없음	
					10	8	7	6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5		3개국 이상	1개국 이상 3개국 미만	없음		
					5	3	2		
		수출컨소시엄, 해외전시회, 조달시장개척단 등 참가	10		5회 이상	5회 미만 1회 이상	없음		
					10	7	5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참가	10		10회	4회 이상 10회 미만	1회 이상 4회 미만	없음	
					10	8	5	3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참가	15		있음		없음			
				15		10			
수출실적 (20)	최근 5년간의 수출실적 합계	20		1,000만불 이상	100만불 이상 1,000만불 미만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1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1만불 미만	
				20	18	16	14	12	
비계량 (30점)	재지정 필요성		3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0	24	18	12	6
	심사위원 평가의견								
총점			100						
가점 (택1)	벤처창업조달기업		5						
	정부조달문화상품지정기업		5						
	혁신제품기업		5						
	최근 1년간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가 이력		최대 5점		2~3회 : 1점, 4~5회 : 2점, 6~7회 : 3점 8~9회 : 4점, 10회 이상 : 5점				

공공조달길잡이 핸드북

발행처 **조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3동
www.pps.go.kr

디자인 · 인쇄 **청맥기획** (042-487-2589)

- ◎ 본 핸드북은 조달청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민원 및 소송 등의 자료로는 활용될 수 없고, 핸드북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핸드북 초판발행 : 2024.9. (조달현장혁신과)
 핸드북 1차 개정 : 2025.4. (조달성장지원과)
 핸드북 2차 개정 : 2026.4. (인천지방조달청 경기조달지원센터)
- ◎ 핸드북 제작 : 윤경자(책임), 김성철(집필), 김동현(개정), 제도별 공공조달길잡이

